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13. 12

홍범교 · 이상엽

서 언

수 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반 국민들이 세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체계를 다시 짜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세법은 우리 경제사회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 복잡하다면 그에 따른 세법을 알기 쉽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금융이 바로 이러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된다.

과거의 금융산업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규모를 훨씬 능가하면서 스스로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거래 기법 또는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국의 세법은 이러한 금융분야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비과세하면서 세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다 보니 특히 그러하다. 세법상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 소득에 국한되어 있고, 다양한 종류의 금융수익을 이자, 배당 또는 비과세되는 자본이득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세제를 보다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개편하기 위해서는 모든 금융소득을 포괄하여 과세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자·배당 소득뿐 아니라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3단계에 걸친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북유럽 3국을 비롯하여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원적 소득 과세제도와 종합과세의 강화라는 두 가지 대안 가운데서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정책적인 선택을 할 것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홍범교 박사와 이상엽 박사가 공동으로 저술하였다. 저자들은 중간보고 단계에서 좋은 의견을 준 기획재정부 서지원 금융세제팀장, 홍익대학교 김유찬 교수, 한양대학교 오윤 교수께 감사드리고 있다. 그리고 최종 보고 단계에서 코멘트 주신 우리 연구원의 김재진 박사, 안종석 박사와 익명의 심사자 두 분께도 감사드린다. 저자들은 또한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도와준 강미정 전문연구원, 정빛나 연구원에게 감사하며, 보고서 편집을 도와준 장정순 주임연구행정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 기본과제의 전체 진행과정 및 출판단계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기획조정팀 직원들과 연구출판팀 직원들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들의 견해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3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옥 동 석

요약 및 정책시사점

I. 요약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와 다양한 신상품의 출시에 따른 세계의 복잡성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던 금융이 이제는 실물경제를 압도하면서 세계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금융산업이라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역할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산업이 워낙 빠르게 진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거래와 상품이 나타나고 있으나 각국의 세계는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면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과세당국이 미리 예측하여 선도적으로 금융세제를 만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금융세제를 보다 일관성 있고 단순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세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지극히 일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이득은 부동산 양도차익을 제외한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본이득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면서 세제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다보니, 금융세제가 매우 복잡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복잡한 금융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과세제도가 우선 도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1단계로 자본이득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

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금융세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원적 소득세제 또는 종합과세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 국제화에 따른 자본시장의 개방과 1980년대부터 시작된 규제완화 조치 등은 전 세계적으로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 결과 각국 정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조세경쟁(tax competition)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OECD를 중심으로 조세경쟁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현대 경제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세경쟁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유럽 3국이 먼저 시행한 이원적 소득세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도입된 것이다. 즉 이원적 소득세제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을 감안하여 자본이득에 대하여 세제상 우대하는 제도이다.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제의 효율성을 우선시한 결과이다.

한편 세제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현행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도 제시할 수 있다.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상의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의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 상위계층일수록 금융소득도 높다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경제의 일상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성장 vs 분배'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원적 소득세제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이 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을 포함하여 모든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을 설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금

용세제를 보다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개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I. 정책시사점

현행의 금융세제를 보다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개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제1단계는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자본이득과세제도의 도입이다. 제2단계는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는 단계이며, 제3단계는 이원적 소득세제 또는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선택하여 제도를 정착하는 단계이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에서는 현행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 과세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거나, 또는 세율을 14%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본이득에 대하여 새롭게 과세하는 만큼 분리과세를 통하여 세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할 때 이러한 방식을 택하였다. 20%의 세율은 분리과세하여 세부담을 줄여주되, 어느 정도 세수 확보를 감안한 수준이다. 그런데 20%의 세율을 부과하면 현재 이자·배당소득에 부과하는 14%의 세율과 상이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 또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원을 구분하여 각각 과세하고 있는 복잡한 현행 방식을 단순화시키지도 못한다. 따라서 대안으로서 14%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 문제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나, 세율 수준으로 볼 때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안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제2단계에서는 현행 제도하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제1단계의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쳐서 현행 세법상 금

용소득의 범위를 자본이득을 포함하는 금융투자소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틀을 유지하면서 금융투자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4%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서는 동일한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간 조세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조세 차익거래의 유인을 제거하여 조세회피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제3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 또는 종합과세의 강화라는 두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을 누진과세하는 근로/사업소득 등과 분류과세하는 방안이다. 분류과세하되, 단일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2단계 누진제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근로/사업소득 등과 동일한 누진단계를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세부적인 안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20~30% 정도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금융투자소득을 분류과세하되,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4~20% 정도의 세율을 부과하고,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0~30% 정도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금융투자소득안에서 간단한 누진제를 적용함으로써 이원적 소득세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단점으로 지적되는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현행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나 14%의 기준에 역매일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은 금융투자소득을 분류과세하되, 여기에도 근로/사업소득 등과 동일한 누진단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더욱 보완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여전히 근로/사업소득 등과는 분리하기 때문에 종합과세보다는 자본소득을 유리하게 취급하는 방안이다.

이원적 소득세제에 대한 대체안으로서는 종합과세의 강화방안이 있

다.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으로써 누진과세를 적용하되, 장기투자소득 등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궁극적으로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면서 현행 미국이나 영국의 과세방식과 유사한 종합과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제를 도입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원적 소득세제를 지향할 것인가,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상대적인 가중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경제철학적인 문제와도 연관된다. 현실적으로 효율성이나 형평성만을 전적으로 고려한 제도는 생각하기 힘들며, 결국 사회적인 합의에 의하여 정책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I. 서론	15
II. 우리나라의 금융세제 현황과 문제점	18
1. 금융소득 과세제도	18
2. 금융상품별 과세제도	20
가. 은행의 수신상품	21
나. 채무증권	22
다. 지분증권	23
라. 파생상품	25
마. 집합투자기구(수익증권)	26
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28
사. 파생결합증권	30
아. 특정금전신탁	31
자. 보험	32
3.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	33
가. 형평성 측면	33
나. 효율성 측면	38
다. 단순성 측면	39
4. 소결	39
III. 금융투자소득의 개념과 현행 판례	44
1. 세제 정비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의 개념	44
2.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선행 연구	48
3. 우리나라의 판례에서 얻는 시사점	52

가. 소득의 구분	53
나. 손익 통산	56
IV. 해외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58
1. 이원적 소득세제	60
가. 북유럽 3국	60
나. 독일	66
2. 일본의 금융소득과세 일원화	70
가.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내용	71
나.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대한 평가	74
3. 미국의 순투자소득세	76
V.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79
1. 기본 방향	79
2. 도입을 위한 대안	81
가. 제1단계: 자본이득과세 도입	82
나. 제2단계: 현행 제도하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확대	84
다. 제3단계: 이원적 소득세제 vs 종합과세의 강화	85
3. 세부 사안	88
VI. 결 론	92
참고문헌	95
부 록. 판례 요약 모음	98

표목차

〈표 II-1〉 비과세 금융소득	19
〈표 II-2〉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20
〈표 II-3〉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2013년 7월 1일 이후 적용)	24
〈표 II-4〉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과세대상 비교	27
〈표 II-5〉 추가연계증권(ELS)과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비교	35
〈표 II-6〉 해외주식 투자와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비교	36
〈표 II-7〉 금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비교	37
〈표 III-1〉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른 금융소득의 구분	45
〈표 IV-1〉 이원적 소득과세 제도 도입 당시 현황	59
〈표 IV-2〉 스웨덴 중앙정부의 세목별 세수	61
〈표 IV-3〉 스웨덴의 소득세율 체계(2013년)	62
〈표 IV-4〉 노르웨이의 소득세율(2013년)	64
〈표 IV-5〉 핀란드의 소득세율(2013년)	65
〈표 IV-6〉 독일의 소득세율(2013년)	68
〈표 IV-7〉 북유럽국가들의 이원적 소득세제 개편 당시 소득세제 비교	69
〈표 IV-8〉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구체적인 내용(2004.6.15)	71
〈표 IV-9〉 미국의 NIIT	77
〈표 IV-10〉 주요국의 이자, 배당 및 주식양도차익 과세 개요 (2013년 1월 현재)	78

그림목차

[그림 II-1] 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체계	21
[그림 V-1] 단계적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	82

I. 서론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금융자본주의란 금융자본이 경제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한 형태라고 정의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을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가 점차 발달하면서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종류의 산업이 등장하는 가운데, 금융산업의 발전이 점차 두드러지게 되었다. 특히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에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에 따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자 서비스업, 그 중에서도 금융업을 전략적인 산업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영국의 Big Bang은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하여 금융산업을 지원한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시장에서의 성과를 통하여 축적된 금융자본은 경제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힘(power)으로서 자리잡았다.

실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본 조달의 역할에 충실하였던 것은 과거의 금융이며, 오늘날의 금융은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실물경제와 무관하게 부단히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자기증식적'인 금융의 성격은 증식된 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금융자본주의로 발현되는 것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금융자본주의의 힘은 공고하다고 하겠다. 금융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창출이나 고용 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금융산업은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자기증식적인 금융산업은 수익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파생금융상품이며, 다양한 종류의 파생금융상품은 여러 가지 결합과정을 거쳐서 더욱 복잡한 수익구조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거시적으로 산업으로서의 금융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과세부담은 얼마가 되어야 할 것인가¹⁾ 하는 문제와 미시적으로 복잡다기해진 금융산업의 변화에 따른 세제의 꼬임 현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본 보고서는 후자의 문제에 대하여 그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와 다양한 신상품 출시에 따른 세제의 복잡성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상품 또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세법상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만 해당되고, 양도차익은 거의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세제가 매우 복잡하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되고,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되지만 과세대상은 주로 부동산 양도소득이며, 주식양도차익과 같은 금융소득은 대주주 등 일부에만 과세되고 있다.

한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소득은 주로 배당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현물주식시장에서의 양도차익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합투자기구의 수입 가운데 주식양도차익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파생상품투자로부터의 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있는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복잡다기하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다기한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를 보다 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체계로 바꿀수 없을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즉, 모든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제의 정비를 도모하고자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비금융투자상품인 은행예금, 저축성 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금융소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일관된 세제의 대상으로서 제시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소득'에서의 '금융투자'의 개념은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금융투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금도 이자라는 금융수익을 얻기 위한 '소극적 투자'²⁾라고 보고 이러한 모든 금융소득을 총

1)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 금융산업이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적다는 것이 부각되고 있다.

괄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을 정의하고, 동 소득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하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제도하에서 관례를 통한 소득 성격 분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실 적용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외제도도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금융세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우리가 투자에서 흔히 얘기하는 passive investment와는 다른 의미이다.

II. 우리나라의 금융세제 현황과 문제점³⁾

1. 금융소득 과세제도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소득을 8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어떤 소득이 어떤 종류에 포함되는지 열거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에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세법상 이자소득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 받는 이자를 의미하고 배당소득은 지분투자자에 대한 이익의 분배금을 의미한다. 은행예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법인의 채권 또는 증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저축성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국내외 법인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배당처분금액,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등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 등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반면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서 과세하고 있다. 채권 매매차익이나 파생상품의 매매차익,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과 같은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법상 규정하는 바가 없어 비과세되고 있다. 반면,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를 제외한 주식의 매매차익, 해외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시점에서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고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자의 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

3) 본장은 본 연구의 진행 중 발간된 이상엽,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정포럼』, 2013. 5.을 발췌·정리하였다.

II. 우리나라의 금융세제 현황과 문제점 19

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이 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⁴⁾ 한편,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표 II-1〉, 〈표 II-2〉 참조).

〈표 II-1〉 비과세 금융소득

근거	종류	가입대상	한도
소득세법	공익신탁의 이익	학술, 종교, 자산 등 공익 목적의 신탁	없음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제한 없음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농어민	연 144만원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3천만원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조합원, 준조합원 등	3천만원
	녹색예금의 이자	제한 없음	2천만원
	녹색저축의 이자	제한 없음	3천만원
	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등 이자	제한 없음	없음
	영농조합법인의 배당	조합원	1,200만원(배당소득)
	영어조합법인의 배당	조합원	1,200만원(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의 배당	제한 없음	없음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조합원	액면가액 1,800만원 이하의 우리사주 보유
	농업협동조합 근로자의 자사 출자지분 배당	조합원	액면가액 1,800만원 이하의 지분출자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	조합원, 회원 등	1천만원(출자한도)
	녹색펀드의 배당	제한 없음	3천만원(가입한도)
재형저축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분기 400만원	

4) 소득세법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되는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이라고 한다.

〈표 II-2〉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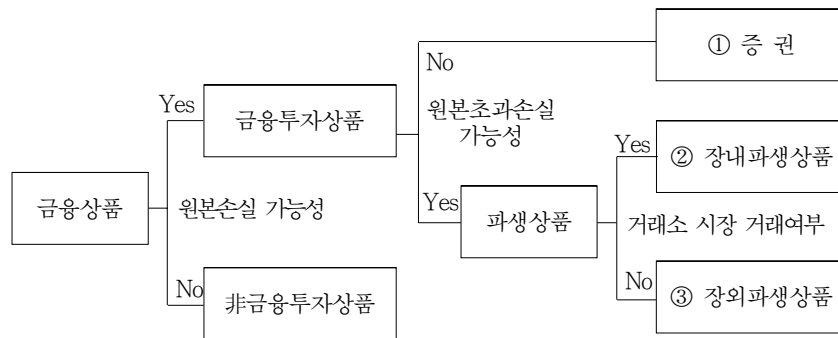
근거	종류	세율
소득세	부동산 경매입찰을 위해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	14
	실지명의를 확인되지 않은 이자	35
	분리과세신청 10년 이상 장기채권	3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38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이자	14
금융실명거래법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	90
	비실명 특정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14
	비실명금융소득으로 비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이자	35
조세특례제한법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	9
	영농조합법인의 배당	5 (1,200만원 초과 시)
	영어조합법인의 배당	5 (1,200만원 초과 시)
	선박투자회사의 배당	5 또는 14
	해외자원개발회사 등의 배당	5 또는 14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배당	5 또는 14
	농협 등의 조합 예탁금	5 ('16년), 9 ('17년 이후)

2. 금융상품별 과세제도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은 자본시장법상 은행의 수신상품, 금융투자업의 금융투자상품, 보험업의 보험상품으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은행의 수신상품은 원본의 지급을 약정하는 금융상품이다. 금융투자업의 금융투자상

품은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처럼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은행의 예금, 보험업의 보험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된다.⁵⁾ 금융투자상품은 [그림 II-1]에서 볼 수 있듯이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증권은 그 성격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보험상품은 미래의 보장을 약속하는 금융상품이다. 자본시장법의 분류에 따라 각 금융상품의 과세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⁶⁾

[그림 II-1] 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체계



자료: 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2006.

가. 은행의 수신상품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등에서는 금전 사용의 대가로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은행은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함으로써

5) 비금융투자상품에는 예금과 보험 등이 있는데 투자성이 있는 주가연계연금이나 변액보험은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된다.

6) 금융상품별 과세제도는 손영철·서종균(2012)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2년 세법개정을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주가연계예금(ELD)은 파생결합상품으로 분류되는 주가연계증권(ELS)과 유사하지만 원금보장이 되고 예금자보호가 되어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주가연계예금(ELD)은 원금을 예금으로 운영하여 원금을 보존하고 예금에서 발생할 이자의 전부나 일부를 주가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얻는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으로 예금 가입자에게 미리 정해진 약관대로 이자를 지급한다. 이 주가연동예금(ELD)은 예금과 파생상품을 결합하여 각 상품의 특성을 겸비하도록 만든 혼성증권으로 약관에 따른 이자소득은 예금의 이자와 주로 지수옵션에서 발생하는 옵션의 매매차익으로 구성된다. 지수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의 직접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법상 과세되지 않지만 주가연계예금(ELD)의 경우에는 예금 이자와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통산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골드뱅킹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통장, 금적립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적립해주는 상품으로 인출시에도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지급해주는 파생결합상품(DSL)이다.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환차익과 금의 매매차익이 있다. 환차익과 금 실물의 매매차익은 과세되고 있지 않으나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상품으로 분류되어 인출 시 소득의 원천과 상관없이 손익을 통산하여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금계좌에 적립된 금을 실물로 인출시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나. 채무증권

채무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세법상 채권 등의 개념이 더 포괄적이다. 세법상 채권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 금융기관 등이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적 자금을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권과

II. 우리나라의 금융세제 현황과 문제점 23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증서와 어음을 포함한다.

채권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채권의 표면금리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른 채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매매차익이 있다. 개인이 직접 채권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고 채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 즉,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비과세대상이다.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발행한 채권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다. 개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채권 매매차익, 채권 매매 관련 환차익이 있는데 채권의 이자소득에만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채권의 매매차익이나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지만 3년 이상 보유한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장기 채권은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을 말하며 국내채권이나 해외채권 모두를 포함한다.

다. 지분증권

지분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합작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되는 것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지분증권인 주식은 기업에 출자한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주주권을 나타내는 주권을 말한다. 개인이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배당소득과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른 주식 매매차익이 있다.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대주주의 주식거래, 비상장 주식거래, 장외시장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난 해 세법개정을 통하여 2013년 7월부터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에는 지분율 2% 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세법상 대주주가 되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된다.

〈표 II-3〉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2013년 7월 1일 이후 적용)

구분	비과세	과세	세율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2% 미만이고 시가총액이 50억원 미 만인 소액주주	대주주	- 중소기업: 10% - 일반기업: 20% - 일반기업주식 중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30%
코스닥시장 (벤처포함)	지분율 4% 미만이고 시가총액이 40억원 미 만인 소액주주	대주주	
비상장 주식	모든 주주	모든 주주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대주주의 보유기간과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 지는데 중소기업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10%, 중소기업 외의 주식으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30%, 그 외의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배당소득, 주식의 매매차익, 주식 매매 관련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국내 주식의 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개인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한다. 동일 과세기간 중 여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모든 해외주식의 매매손익을 통산한 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때 국내 금

용자산의 매매손익과의 통산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외주식 투자에서 매매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이 허용되지 않는다.

라. 파생상품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을 원본초과손실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파생상품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리고 기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 계약을 의미한다. 최초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높은 레버리지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목적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파생상품은 한국거래소와 같은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과 거래소밖에서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코스피 200지수 선물, 코스피 200지수 옵션, 개별 주식선물, 국채선물, 달러선물, 금선물 등과 같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 장내파생상품에 해당되고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고 개별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달러 선도 거래, 선물환 등은 장외파생상품에 해당된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도 없으며 개인이 파생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를 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세도 부과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해외에 상장된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지 않다.

한편, 금융 선진국인 미국 등 여러 국가들에서는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다.⁷⁾ 미국은 헤지 목적이 아닌 주가지수선물과 주가지수옵션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⁸⁾ 선물과 옵션의 경우에는 투자기간과 관계 없이 발생 이익의 60%는 장기자본이득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40%는 단기자본이득으로

7) 홍범교(2005)은 미국의 파생상품 과세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8) IRC Section 1256의 내용을 홍범교(2005), pp. 47~48에서 참조.

간주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⁹⁾ 한편, 헤지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경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다.

마. 집합투자기구(수익증권)

펀드는 집합투자를 위해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채권, 주식, 일반상품, 파생상품 등과 같은 자산에 투자하여 투자자에게 실적 배당하는 간접투자상품을 말하는데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를 지칭한다.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의 신탁형과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의 회사형 및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의 조합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기구는 대부분이 신탁형이나 일부 투자회사형도 있다.¹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나누어 수익증권인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고 투자회사는 무액면 기명식으로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다.

개인이 펀드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채권의 이자소득 및 매매차익, 주식의 배당금과 주식의 매매차익, 해외주식의 배당금과 해외주식 매매차익,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해외채권이나 해외주식 매매관련 환차익 등이 있다. 펀드는 투자 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과세대상 소득과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구분하여, 발생하는 이익 지급 시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 시나 펀드 환매 시에 원천징수한다. 과세대상 수익을 배당 소득으로 간주하는데 상장주식이나 벤처기업주식의 거래로 인한 매매·평가차익과 장내파생상품의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의 손익을 통산한 후 각종 보수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배당

9) 미국은 장기투자에 대해서 세제상 우대하는데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를 하고 단기자본이득은 경상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과세를 하고 있다.

10) 문성훈 외(2010), p. 87 참조

II. 우리나라의 금융세제 현황과 문제점 27

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펀드는 주 투자 대상자산에 따라 세부담이 다르다.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매매차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소득이 비과세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다. 한편,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의 경우에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뿐만 아니라 채권의 매매차익을 통산하여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세부담이 높다.

〈표 II-4〉 직접투자과 간접투자 간 과세대상 비교

구분	발생 소득	직접투자	간접투자
채권	이자, 할인액	과세	과세
	매매·평가차익	비과세	과세
국내주식	배당	과세	과세
	매매차익	일부 과세	비과세
	평가차익	비과세	비과세
해외주식	배당	과세	과세
	매매차익	과세	과세
	평가이익	비과세	과세
과생상품	장내과생상품	비과세	비과세
	장외과생상품	비과세	과세
외환	환차익	비과세	과세

자료: 김용민(2010), p. 153 재인용.

펀드의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여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채권의 이자소득과 매매차익, 그리고 주식의 배당금을 통산한 이익보다 주식의 매매차손이 클 경우에 실제 펀드의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펀드는 결산시점에서 미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결산 이후에 투자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환매를 한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여도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개인이 해외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역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에 상관없이 모든 손익을 통산하여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역내 펀드는 매년 한차례 지난 1년간의 이익을 결산한 후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이와 달리 역외 펀드는 매년 결산을 하지 않아도 되어 환매 시에만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즉, 역외 펀드는 과세이연이 가능하여 절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펀드이다. 즉, 개별 주식과 인덱스 펀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다. ETF는 투자대상에 따라서 주가지수 ETF, 섹터지수 ETF, 해외지수 ETF, 상품 ETF, 채권 ETF, 파생상품 ETF 등으로 구분이 된다.

개인이 ETF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에는 분배금과 ETF의 가치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이 있다. ETF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배당,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게 되면 추종지수와 괴리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추종지수와 괴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분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ETF의 매도 시에 보유기간과세가 도입되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¹¹⁾ 다만,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주가지수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식형 ETF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유기간과세는 ETF의 매매차익과 과세표준 기준가의 상승에 따른 투

11) ETF의 보유기간과세는 세계상 일반펀드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II. 우리나라의 금융세제 현황과 문제점 29

자신탁의 이익 중에 작은 것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ETF도 펀드처럼 투자대상 자산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과세되는 소득으로 나누어져 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장내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 반면 채권의 이자,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장외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 주식의 배당금, ETF의 분배금은 과세가 된다. 따라서 ETF의 투자대상과 운영방식에 따라 과세표준 기준가의 상승분과 매매차익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 ETF는 주로 주식과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의 대부분이 비과세로 과세표준 기준가의 변동이 매매차익에 비해 매우 적어 실제 세부담은 매우 낮다.¹²⁾ 현재 다른 ETF에 비해 세부담이 가장 적은 KODEX 레버리지, KODEX 인버스, KODEX 등이 거래가 매우 활발하며 현재 거래량 상위 3위에 포함되어 있다.¹³⁾

한편, 개인이 해외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해외주식처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2011년부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상장 ETF에 대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국내에 상장된 ETF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역외투자회사형 ETF를 해외주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였다.¹⁴⁾ 한 증권사가 국세청에 역외투자회사형 ETF의 과세에 대해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2011년 12월 해외에 상장된 역외회사형 ETF를 해외주식으로 간주하여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¹⁵⁾

12) 레버리지 ETF는 주식과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일간 주가지수 변화의 2배를 추적하는 ETF이다.

13) KODEX는 삼성자산운용의 ETF 브랜드로 KODEX 인버스는 일간 KOSPI 200지수를 역방향으로 추적하는 ETF이고 KODEX 200은 KOSPI 200지수를 그대로 추적하는 ETF이다. 이들 ETF의 주 투자대상은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이다.

14) 역외 ETF의 대부분이 역외투자회사형 ETF이다.

15) 국세청 질의회신(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69, 2011.12.22)

사.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즉, 파생결합증권은 증권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 증권으로 타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외생적 지표에 의해서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을 말하며 증권에 내장된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주가연계증권, 이자율연계증권, 통화연계증권, 신용연계증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¹⁶⁾ 그러나 실제 금융회사에서는 크게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워런트증권(ELW), 그리고 파생상품연계증권(DLS)으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다.

주가연계증권(ELS)은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여 만기 수익이 결정되는 신종 유가증권으로 증권회사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은 운용자산의 상당부분을 국공채와 같은 우량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원금의 일부나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가지수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데 상품의 구조에 따라 주가의 상승 시는 물론 하락 시에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이다. 앞에서 언급한 주가연계예금(ELD)과 운영방식이나 수익구조는 비슷하나 주가연계예금(ELD)과 달리 주가연계증권(ELS)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도 있으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파생상품연계증권(DLS)은 주가연계증권(ELS)을 제외한 이자율연계증권, 통화연계증권, 상품연계증권 등의 파생결합증권을 통칭한다. 즉, 파생상품연계증권(DLS)은 유가증권과 파생금융계약이 결합된 증권으로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으로 기초상품이 이자율, 통화, 신용, 환율, 금과 같은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16) 파생결합증권이 집합투자증권처럼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간접투자 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수익이 외생적 지표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집합투자증권과 차이가 있다.

인 점 이외에 나머지는 주가연계증권(ELS)과 동일하다.

주가워런트증권(ELW)은 매수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래의 만기일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으로 구조와 성질은 옵션과 유사한 파생결합증권이다.

세법상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은 소득의 원천 구분 없이 모든 손익을 합산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주가연계증권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주로 채권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인데 소득의 원천 구분 없이 발생하는 전체 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장내파생상품에 직접 투자하거나 펀드를 통하여 장내파생상품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 장내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과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한편, 주가워런트증권(ELW)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이지만 옵션과 구조와 성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주가워런트증권(ELW)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나 권리 행사를 통하여 만기 시 지급받는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주가워런트증권(ELW)과 유사한 금리워런트증권(DLW)은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같이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차이가 있다.¹⁷⁾

아. 특정금전신탁

신탁상품 중에서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를 금전신탁이라 하고 그 외 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신탁이라고 하는데,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을 지정하여 금융회사에게 지시하고 금융회사는 그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수익자에게 실적을 배당하는 단독운용 상품을 말한다. 특정금전신탁은 수탁자와 위탁자가 1:1 계약에 따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집합투자기구와 차이가 있으

17) 국세청 법규소득 2011-0323 참조

나 특정금전신탁은 집합투자기구나 파생결합증권과 같은 유사한 상품의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다.

소득세법상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가 된다. 즉, 특정금전신탁은 개인이 여러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특정금전신탁이 집합투자기구나 파생결합증권처럼 운영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나 파생결합증권과 세제상 다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자. 보험

보험은 세법상 크게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에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저축이나 투자목적의 보험상품을 말하며 저축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즉시연금 등이 있다. 반면, 보장성 보험은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등과 같이 만기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을 말한다. 종신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세법상 보험차익이라고 하는데 만기나 해약 시에 받는 보험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것이다. 이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만기나 해지가 최초 보험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고 최소 5년 이상 월적립식으로 보험금을 납부한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금형태로 분할받을 시에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거나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인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보장성보험은 실제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라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

조세의 기본원칙에는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이 있다. 먼저 형평성 원칙은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으로 구분된다. 수평적 형평성이란 소득의 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는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직적 형평성이란 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을 누진적으로 증가시켜 소득의 재분배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효율성 원칙은 과세제도가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순성 원칙은 과세제도를 단순하게 유지하여 납세자의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고 징수비용이나 납세협력비용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상품 과세제도를 조세의 기본원칙인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가. 형평성 측면

1) 수평적 형평성

우리나라의 금융상품 과세제도는 수평적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지만 채권의 매매차익,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매매차익과 같은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

같은 금융자산에 투자하더라도 금융상품 간의 과세상 취급이 상이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채권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비교해 보면 과세대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채권의 직접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에는 이자소득과 매매차익이 있는데 이자소득에만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다. 반면, 간접투자인 펀드의 경우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채권의 매매차익을 모두 통산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즉, 채권의 경우에는 직접투자가 간접투자에 비해 세제상 우대를 받고 있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상품으로 분류가 되어 다른 과세가 적용이 되는 경우도 많다. 첫째, 주가연계증권(ELS)과 유사한 수익구조를 가진 금융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자(〈표 II-5〉 참조). 주가연계증권(ELS)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는 주가연계펀드(ELF),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구조를 복제하는 특정금전신탁, 그리고 Reverse Convertible Fund(RCF)와 같은 금융공학펀드 등이 있다. 주가연계펀드(ELF)는 주로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펀드이고 주가연계신탁(ELT)은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이다. 금융공학펀드는 동태적 헤징기법을 이용하여 주로 주식이나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구조를 복제하는 펀드이다. 각각의 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은 거의 동일하지만 세법상 다른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세제상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데 소득의 원천 구분 없이 전체 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주가연계증권(ELS)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인 주가연계펀드(ELF)와 주가연계신탁(ELT)의 경우에도 발생하는 모든 이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채권과 옵션 혹은 주가워런트증권(ELW)에 투자하여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구조를 복제하도록 운영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세법상 소득의 원천별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어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펀드(ELF), 주가연계신탁(ELT)에 비해 세부담이 훨씬 적다. 이는 펀드의 경우 옵션이나 주가연계워런트증권(ELW)의 거래나 권리 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구조를 복제하기 위하여 주로 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는 금융공학펀드인 RCF도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적다. 이는 RCF와 같은 금융공학펀드의 주투자 대상인 주식과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표 II-5〉 추가연계증권(ELS)과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비교

투자 상품	추가연계증권 (ELS)	추가연계펀드 (ELF)	추가연계신탁 (ELT)	ELS 수익을 복제하는 특정금전신탁	금융공학 펀드 (RCF 등)
법적 형태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 기구	투자신탁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 기구
주 투자 대상	채권, 파생상품 (선물, 옵션)	ELS, 채권	ELS	채권, 옵션	주식,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발생 소득	채권 이자, 채권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매매차익	ELS의 소득, 채권 이자, 채권매매차익	ELS의 소득	채권 이자, 채권매매차익, 파생상품 매매차익	배당, 주식매매차익, 파생상품 매매차익
과세 대상	모든 손익을 통산	모든 손익을 통산	ELS의 소득	채권이자	배당
세목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 과세	종합과세	종합과세	종합과세	종합과세	종합과세

둘째, 해외주식 관련 투자의 경우에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표 II-6〉 참조).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해외주식 직접투자, 역내·외 해외주식형 펀드, 역내·외 해외주식형 ETF 등이 있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분류과세된다. 반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역·내외 해외주식형 펀드와 역내 해외주식형 ETF 경우에는 해외주식의 배당소득과 매매차익 등을 통산하여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다. 한편, 역외 해외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해외주식의 직접투자처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는 해외주식의 직접투자나 역외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것이 역·내외 해외주식형 펀드나 역내 해외주식형 ETF에 비해 세부담이 적다.¹⁸⁾

18)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절세를 위해 역외 ETF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역

〈표 II-6〉 해외주식 투자와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비교

	해외주식	역내 해외주식형 펀드	역외 해외주식형 펀드	역내 해외주식형 ETF	역외 해외주식형 ETF
발생소득	배당, 매매차익	배당, 매매차익	배당, 매매차익	분배금, 매매차익	분배금, 매매차익
과세대상	소득에 따라 구분	전체 소득	전체 소득	분배금, 매매차익	소득에 따라 구분
세목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과세	배당소득에 한함	종합과세	종합과세	종합과세	배당소득에 한함
기타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

셋째, 금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금융상품 간 세제상 취급이 상이하다(〈표 II-7〉 참조). 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금 실물(골드바) 직접투자, 골드뱅크, 금 선물, 역내·외 금 ETF 등이 있다. 세법상 금 실물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금 실물을 매수할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장내파생상품인 금 선물에 투자할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골드뱅크이나 역내 금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금 실물에 투자하여 금의 가격을 추종하는 역외 금 ETF 경우는 수익구조나 리스크가 골드뱅크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내 ETF와 세제상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매일경제 2013.3.6).

〈표 II-7〉 금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비교

투자상품	금 실물 (골드바)	골드뱅킹	금 선물 투자	역내 금 ETF	역외 금 ETF
발생소득	매매차익	매매차익	매매차익	매매차익	매매차익
과세대상	없음	매매차익	없음	기간보유 과세	매매차익
세목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과세		종합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
기타	단, 매수 시 부가가치세 10%				

2) 수직적 형평성

우리나라는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적으로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종합소득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금융소득도 종합소득과세의 대상이다. 수직적 형평성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였고 고액 금융자산가들의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물가연동채의 원금 상승분 비과세를 폐지하고 상속형 즉 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2억원으로 축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되거나 분류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¹⁹⁾ 금융자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은 비과세되거나 분류과세되는 금융상품들을 이용하는 투자전략을 세워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회피하거나 세부담을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10년 이상 유지한 월납입식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고액자산가들에게 절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기회를 제공

19) 2013년 현재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는 가입기간이 종료된 것을 제외하면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가 13개 항목과 소득세법의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이 있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 가입조건이나 한도 없이 비과세 된다는 점이다. 이는 2013년 3월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과세 재형저축의 가입대상 소득이나 한도와 비교해 보면 세제혜택이 지나치게 크다. 재형저축 가입대상은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3천 5백만원 이하 사업자로서 분기별 3백만원, 연간 1천 2백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7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나. 효율성 측면

금융상품의 과세제도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투자 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과세하고 자본이득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다. 또한, 이자와 배당소득이 감면되거나 비과세되는 금융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현행 금융상품 과세제도는 조세 차익을 위한 투자전략이 가능하여 왜곡효과가 발생되어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려는 고액자산가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역·내외 해외주식형 펀드나 역내 해외주식형 ETF보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역외 해외주식형 ETF 투자를 선택할 것이다. 같은 이유로 골드뱅크에 투자하기 보다는 분류과세되는 역외 금 현물 ETF에 투자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인 실질은 유사하지만 세부담이 낮은 상품에 투자할 가능성도 크다. 주가연계증권(ELS)에 비해 세부담은 적으면서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구조를 복제하는 금융공학펀드 투자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현행 금융상품 과세제도는 형평성 결여로 인하여 조세차익 거래를 위한 투자전략을 계획하거나 투자상품을 개발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다. 단순성 측면

소득세법의 열거주의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식의 경우만 보더라도 과세제도가 매우 복잡하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대상이지만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율도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다른 세목이 적용되어 이해가 어렵다. 원금보장이 되는 추가연계예금(ELD)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원금보장형 추가연계증권(ELS)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세율이 동일하긴 하지만 세목이 다르다. 금 실물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되고 있지 않는 데 반해 골드뱅크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역외 금 실물 ETF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역내 해외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역외 해외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홍범교 외(2009)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 기초자산의 수익구조를 복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제도가 없어 앞으로 기초자산과 파생상품의 결합된 혼합증권이나 혼성증권이 증가하게 될 경우에 금융상품 관련 과세제도는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열거주의로 인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가 포괄적이지 못해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시 과세의 논란의 여지가 크며 조세행정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크다.

4. 소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금융상품 과세제도는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형평성의 결여가

납세자의 투자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켜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과세제도를 더 복잡해지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금융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논의하는 방안은 현행 세제들을 유지하면서 형평성을 제고하는 단기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첫째, 추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은 유사한 금융상품에 비해 세제상 불리한 취급을 받고 있는데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면 동일하게 과세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파생결합증권은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반면,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를 복제하는 펀드나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세제상 유리하다.

먼저 추가연계증권(ELS)과 펀드·특정금전신탁 간의 과세대상의 차이를 없애는 방안으로 김애경·문성훈(2008)이 제시한 것처럼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도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현재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직접투자, 펀드투자, 특정금전신탁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파생결합증권의 운용자산이 분리계리가 되어야 하나 소득별로 구분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²⁰⁾ 그러나 금융기관의 회계기준에도 파생결합증권은 복합금융상품으로 분리 계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노영훈(2010)은 추가연계증권(ELS)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금융상품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다른 문제점들도 지적하였다. 첫째, 추가연계증권(ELS)의 만기가 일반적으로 3년인데 조기상환 시나 만기 시에

20) 이영한 외(2010), p. 435 참조

II. 우리나라의 금융세제 현황과 문제점 41

다년간 발생한 수익이 지급일의 해당연도에 과세소득으로 귀속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세부담이 커지는 결집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투자자가 여러 추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한 추가연계증권(ELS)에서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원금 손실을 본 추가연계증권(ELS)과 이익을 본 추가연계증권(ELS)의 손익이 통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파생결합증권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²¹⁾ 즉,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이 동일하게 과세하고 손익이 통산된다면 파생결합증권의 과세 형평성 문제는 완화될 수 있다. 또한 파생결합증권이 특정 자산의 수익구조를 복제하는 합성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도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과세된다면 형평성 문제도 해결되고 동시에 금융상품 관련 세제도 단순해지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소득이 만기 시에 집중되어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연계증권(ELS)처럼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펀드처럼 매년 결산을 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만기 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과세가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여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역내 금융상품과 역외 금융상품 간의 과세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역내 금융상품이 세제상 우대를 받는 것

21) 홍범교 외(2009)는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증권, 파생상품의 자본이득을 포괄하는 자본이득세제를 정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자와 배당과 같은 자본소득은 현재처럼 과세하고 자본소득과 자본이득이 혼합된 경우에는 자본이득으로 규정하여 자본소득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라면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해외 금융상품에 세제상 혜택이 있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 세수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현재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나 역외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어 분류과세가 되고 있다. 반면, 역내 해외주식형 펀드나 역내 해외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다. 따라서 투자여력이 많은 고액자산가의 경우에는 절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거나 역외 ETF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역내 ETF에 비해 역외 ETF를 세제상 불리하게 취급하거나 최소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를 참고로 한다면 영국은 역외 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에 보고하는 경우에 세제상 역내 펀드와 동일하게 매매차익에 대해서 자본이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는 역외 펀드나 역외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다.²²⁾ 또한 역외 ETF나 역외 펀드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다른 손익과 통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영국이 역외 펀드나 역외 ETF가 절세나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취한 조치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역내 ETF와 역외 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목의 차이를 제거하는 방안으로 역내 ETF와 역외 ETF의 매매차익도 국내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세로 전환하면 절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역외 ETF를 이용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역내 ETF와 역외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게 되

22) 「Financial Times」는 미국이나 유럽에 상장된 대부분의 역외 ETF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아 매매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아닌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역외 ETF의 매매차익은 최대 50%의 소득세가 부과되어 주식이나 역내 펀드의 매매차익에 최고 28%의 자본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에 비해 세 부담이 훨씬 크다(2010.7.9).

면 금 관련 투자상품 간의 형평성 문제도 비슷하게 완화될 수 있다. 골드뱅킹이나 역외 금 현물 ETF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역외 금 현물 ETF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고액자산가가 절세나 조세회피를 하기에 유리하다. 따라서 역외 금 현물 ETF를 포함한 모든 역외 ETF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금의 실물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 실물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과세되는 채권의 매매차익, 소액주주의 주식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매매차익 등을 포괄하는 양도차익 과세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단기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금 실물의 추적이 어렵고 금 실물의 매매 이유가 투자인지 단순한 소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금 실물에 대한 과세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인하 이후 절세나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골드바와 같은 금 실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²³⁾ 영국의 경우처럼 특정 금액 이상의 금 실물 거래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보인다.²⁴⁾

23) 「조선일보」는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한다는 세법개정 발표 이후 시중은행의 골드바 판매가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2013. 3. 8).

24) 영국은 6,000파운드 이상의 금과 같은 귀금속이나 보석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Ⅲ. 금융투자소득의 개념과 현행 판례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세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제Ⅲ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을 설명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현행 세법상 금융소득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세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행 금융소득세제하에서 금융소득의 분류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판례를 통하여 이를 살펴봄으로써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이 이러한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1. 세제 정비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의 저축·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자소득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금,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으로 정의된다. 배당소득은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으로 정의된다. 단,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 반면 개인이 사업자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나 배당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세법상으로 엄밀히 따지면 금융소득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

III. 금융투자소득의 개념과 현행 판례 45

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좁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즉,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금융과 관련된 모든 소득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을 지칭한다.

그런데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거래도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세법상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는 이러한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에 대하여 가능한 한 규명한 후에 이자 또는 배당으로 분류할 수 있으면 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면,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잉여금의 분배로 보아 세법상 배당금으로 취급하여 과세하고, ELW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파생상품인 옵션의 소득과 성격이 같다고 보아 비과세대상으로 한다. <표 III-1>은 현행 세법상 다양한 금융소득에 대한 취급을 정리하고 있다.

<표 III-1>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른 금융소득의 구분

금융상품의 종류			이자·배당소득	양도소득
수신상품			이자소득	-
보험상품			이자소득	-
금융 투자 상품	증권	채무증권	이자소득	비과세 ¹⁾
		지분증권	배당소득	비과세 ²⁾
		수익증권	배당소득	-
		파생결합증권	ELS, DLS	배당소득
	ELW		비과세	-
파생상품		-	비과세	

주: 1) 채무증권 양도 시 채권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과세

2) 비상장주식 등의 자본이득은 과세함

자료: 정운오 외(2010), p. 268.

이러한 과세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금융관련 소득을 이자나 배당, 또는 양도차익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합성상품(hybrid)을 통하여 양도차익을 이자와 같이 고정적 금액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소득으로 바꿀 수 있으며, 아니면 그 반대로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그 수익원에 중점을 두어 양도차익으로 성격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즉, 금융 관련 소득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과세대상을 비과세대상으로, 비과세대상을 과세대상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금융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배당소득과 확장된 의미의 금융소득이 포함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서 나오는 금융거래상의 소득이 다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과세를 일원화하고 제도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많은 과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운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한 다음 단계의 문제는 무엇인가? 종합과세 실시 여부가 두 번째 단계의 문제이다. 이자, 배당뿐 아니라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경우, 이런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현행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틀 안에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금융투자소득'이란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가 아닌,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및 저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일컫는 용어로 정의한다. '금융소득'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다고도 볼 수 있으나, 세법상의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광의의 금융소득 대신에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세법상의 금융투자소득은 현행 세법상의 금융소득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다시 종합과세 실시 문제로 돌아가서, 형평성의 논리에 따른다면 종합과세의 틀 안에 집어넣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에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 속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하나로 묶고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북유럽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원적 소득과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원적 소득과세의 문제를 논의할 때는 현재의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자본주의의 문제점이 2008년의 금융위기를 통하여 드러난 마당에 효율성의 논리만 가지고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렇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양 극단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일단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이라는 필요조건이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금융투자소득을 수익원 등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다소 차이를 두어 과세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이자와 같이 '수동적인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주식투자와 같이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세제상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이다. 일본의 금융소득과세 일원화 조치처럼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슬로건에 맞추어 손익 통산의 범위를 가능한 넓혀줌으로써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취한 예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은 고소득층일수록 많을 것이다. 따라서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수동적인 투자'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세제상 우대해 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와 같이 '수동적 투자'에서 오는 소득과 '위험감수 투자수익'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조세 중립성을 위한 세제 단순화에 역행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하의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의하고, 그 바탕 위에서 금융세제의 정비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²⁵⁾

25) 현행의 세제와 대비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 제도가 정착되어 이자·배당뿐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점이 오면

2.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선행 연구

본절에서는 자본이득 과세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특히 자본이득세 부과 시 대두되는 여러 문제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대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의 주된 논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자본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 자본이득 중 미실현이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보유기간 장·단기에 따른 차등과세 및 세율, 자본손실도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할지 등이다.

우선 자본이득에 대한 본질을 오재선(1989)은 자본자산(capital assets)의 처분가치 혹은 시가와 그 자산 원가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자본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득이라 하였다. 유재선·김태정(2009)은 “자본자산이란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의 주된 원천으로 소득을 만들기 위하여 획득한 자산 즉 회사증권, 부동산 정부채권, 조합의 지분, 리스 및 계약에 의한 권리”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본자산과 다른 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결국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세법상 자본이득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세법상 과세범위를 정하는 학설은 Haig-Simons의 순자산증가설과 Fuisting의 소득원천설 두 가지가 있다. Haig-Simons의 순자산증가설에서는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일정기간 순자산을 증가시킨 경제적 이익은 소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자본이득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Fuisting의 소득원천설에 따르면, 일정 원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발생하는 수입만을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본이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²⁶⁾

먼저 Haig-Simons의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자본이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첫째, 자본이득을 통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해 얻게되는 경제적 소득과 구별할 필요가 없다. 즉, 경제력이 증가

현재 쓰고 있는 광의의 금융소득이라는 용어가 용어로서 금융투자소득을 대체할 수 있다.

26) 홍범교·김진수(2010), p. 25.

한다는 것과 그에 따른 세금 부담력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만약 자본이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차별과세하면 공평한 세부담을 저해하고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저해할 수도 있게 된다. 둘째, 자본이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세를 지연시킬 경우에, 내 부유보나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함으로써 일반과세소득을 자본이득으로 전환하여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셋째, 통상적으로 자산가격의 상승은 물가상승을 초과하게 되며, 이는 실질소득의 증대로 이어진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달리 자본이득에 대해 차별적으로 과세하면 수평적 공평성도 어긋나며, 자본이득은 대부분 고소득자에게 귀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는 수직적 공평성도 오히려 저해하게 될 것이다.

반면, Fruiting의 소득원천설에 따라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과세반대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주된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이득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가치의 변화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실질가치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반소득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것은 자본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키 때문에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자본이득과세가 동결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자본 간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셋째,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자본이득을 실현한 시점에 과세할 경우 세부담이 매우 커지는 문제가 있다.²⁷⁾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선행연구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규모는 급속하게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소유가 보편화되어 부의 축적 및 세습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주식의 자본이득과세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곽태원(2000), 전영준 외(2000)뿐만 아니라 최경수(2003) 등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인 목적과 과세자료 수집의 애로사항 및 징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게만 과세하

27) 장지경·최종서(2012), p. 228.

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은 모든 개인이 납세대상자이다.

노영훈(2002)은 자본이득과세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과세체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고 국가별 자본이득세의 성립배경과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인 통상소득과 자본이득 간의 구분, 이에 따른 차등과세의 근거와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안중석·권오성(2005)은 금융부문에 대한 조세정책의 기존 연구가 각 분야별로 독자적으로 연구되어 옴에 따라, 이에 차별성을 두어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여 금융부문 과세에 대한 이론과 실제정책을 정리하고 상호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우선 금융소득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종합과세제도가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제의 강화보다는 각종 조세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다른 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여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조세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각종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안중석·전병목(2007)은 1990년대 이후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한 북유럽국가들의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할 경우에 자본소득과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부문을 제외한 자본소득의 과세 전환에 따른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는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으며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도 미약하게나마 나타났다. 따라서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를 유지하면서 DIT를 도입하여 세수중립적인 개편을 할 경우, 기존 비과세되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추가적인 세원 확보가 가능하며, 이는 부가가치세율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최영렬(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형식상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저율분리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원적 소득세제에 가까운 체제라고 보았다. 우리나라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금액의 소득이라도 소득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조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하는 구조이다. 또한 이자 및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의 관계는 대체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며 파생 금융상품거래 차익에 대해 과세할지라도 세수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세수확보 목적 아니라 조세의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표방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여 모든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하여야 하며 공평성을 저해하는 비과세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지경·최종서(2012)는 자본이득 과세제도로의 전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과세방안을 제시한다. 일본은 자본이득 과세제도로의 전환을 일시에 단행하지 않고 점차 비과세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였고 종합과세체계가 아닌 분리과세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그리고 장기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 자본손익의 통산허용, 이월과세 등의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이득 전면과세 시행 이후에도 10년간 증권거래세를 유지하였다.

또한 윤현석(2012)은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기본적 논의를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입법례로 비교하였고 자본이득과세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쟁점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세 공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자본이득은 반드시 과세되어야 하므로,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수단으로 이용하였던 양도소득세제를 자본이득세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였다.

오윤(2012)은 자본이득과세의 범주를 설정하고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포괄성과 중립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방안을 논의하였다. 자본이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하며, 모든 자본이득을 포괄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을 도입할 것을 주

장하였다. 그리고 자본소득은 생애소비 기회의 이중과세적인 성격이 있으며 국제화된 자본시장에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판정하는 데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적용하고 있는 원천징수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할 경우, 자본손실을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정 자산의 자본손실에 대한 상계가능 대상을 동일 성격의 자산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본이득은 이중과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본손실을 미래의 자본소득과 상계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국고 사정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그 허용범위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금융투자소득세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세의 도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절에서 그 선행연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자본이득세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홍범교·김진수(2010)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일차적인 자본이득세제의 도입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이후 금융세제를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제Ⅳ장에서 다른 나라의 제도들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와 현재 실행 중인 다른 나라의 제도들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관례에서 얻는 시사점

본절에서는 금융소득세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관례들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금융세제와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도출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²⁸⁾ 일반적으로 금융세제를 금융기관과 금융소득 관련 세제 두 가지로 구분하나,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득 관련 관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28) 이하에서 언급된 몇가지 중요한 관례는 <부록>에 수록하였음

가. 소득의 구분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채택하고 있어, 법률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열거된 것만 규제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현행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등을 두어 유사성이 인정되는 소득은 소득세 부과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001년 말부터 이자,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은 포괄적으로 과세함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많아지고 있다.

1) 엔화스왑예금 거래

그동안 끊임없는 분쟁을 유발하였고 금융소득과 관련된 판례가 가장 많았던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소득구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서울고등법원2009누5840 (2010. 01. 26))²⁹⁾됨에 따라 해당 거래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2012년 1월 1일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신설을 통해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소득세법에서는 예금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환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은행들은 엔화 정기예금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는 반면, 선물환 차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2009누5840은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원화예금거래로 보기 어려운 등 선물환차익은 자본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이익에 불과할 뿐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없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

29) 부록 ① 참조

이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선물환이익은 이자소득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례는 서울고등법원2009누5840(2010. 01. 26) 이외에도 대법원2010두5004, 대법원2010두5257,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740, 서울고등법원2009누5840,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511 등이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로 통합된 거래로 보여지는데,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에 규정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조심2008서3623, 2009. 06. 08³⁰⁾)을 하였다. 이러한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여 지급받은 선물환차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유사한 심사청구로는 조심2008서3614, 조심2008서0365, 조심2008구1271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이익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세법 개정을 통해 이자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2)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

금 관련 예금상품인 골드뱅크의 수익에 대한 과세 논쟁은 2000년 중반 이후 금융기관들이 비과세상품으로 골드뱅크를 출시하면서 꾸준히 있어 왔다. 골드뱅크는 금 실물 매매에 해당돼 소득세법상 수익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 금융기관의 입장인 반면, 파생결합증권(DLS)에 해당돼 관련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왔다. 그러나 2010년 정부가 골드뱅크 수익은 배당소득세 부과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판매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등 금융기관들은 조세 불복 절차에 착수했으나 조세심판원에서 이를 기각(조심2012서3944)³¹⁾ 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정부가 그동안 비과세로 운영되던 골드뱅크를 2009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산물 등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

30) 부록 ② 참조

31) 부록 ③ 참조

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는 골드뱅크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 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골드뱅크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심사청구사례로는 조심2012중0095, 조심2011서2195, 조심2012전361, 조심2012부366 등이 있다.

3) 이자·배당소득

수원지방법원2011구합4313(2011. 09. 01) 판례는 배당세액공제액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취소사건이다. 이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동시에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신고시 이자소득에 대해 각각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으로 산출한 세액 중 큰 금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산출세액 차액에 대해서는 배당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받았다. 납세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62조 본문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이자소득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9조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2조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 이자소득이나 기타 이자소득 등의 소득의 종류가 아니며, 동법 제15조 제2호 및 제62조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분리과세 시 산출되는 세액만큼은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이자소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즉,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 등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의미하고, 세율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1997년에 SK증권이 JP Morgan과 외

환과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대규모 소송을 오랜 시간 진행하였다. SK증권의 옵션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SK증권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과생상품거래이익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세청은 채권 또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21641, 서울고등법원 2007누2334)은 JP Morgan의 투자이익을 자본이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확정판결하였다.

나. 손익 통산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지에 대한 판례로는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70(2012. 11. 23)가 있으며, 이 판례에서 세금납부는 소득세법 체계상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관련 법령의 취지를 보면 투자신탁의 배당소득을 통산하여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어야만 배당소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투자자가 전체적으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소득세법」 체계가 과세 영역과 비과세 영역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에서 파생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그리고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로는 서울행정법원2011구합 17257³²⁾(2012. 01. 12)가 있다. 해외펀드 상품의 경우에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도록 하는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더라도 그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투자신탁의 이익', 즉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2012누4571(2013. 01. 18)³³⁾에서 펀드를 환매하면서 원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을 경우 원금 대비 투자손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뿐,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이 발생하

32) 부록 ④ 참조

33) 부록 ⑤ 참조

Ⅲ. 금융투자소득의 개념과 현행 판례 57

였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다시 내렸다. 이 근거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은 투자신탁의 이익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투자이익 전부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 등 일부 손익은 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손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손실이 과세대에 포함되는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원금 대비 투자손실에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인 배당소득이 과세될 수 있으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만큼 비과세 혜택이 있게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거주자 판정에 대한 판례로는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824(2013. 02. 08)를 들 수 있는데, 실질귀속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로서 유사판례로는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627(2013. 02. 08)이 있다. 이 판례를 보면, 벨기에 국적 지주회사들은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한·벨 조세조약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실질 귀속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다.

그리고 이중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한 판례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8737에서, 국외에서는 임대소득, 국내에서는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거주지가 국내와 국외인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IV. 해외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OECD의 소득세체계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종합소득세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금융소득을 이자, 배당 및 자본이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 금융소득과세에 있어서 거의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순수한 이원적 소득세제(DIT, Dual Income Tax)라기보다는 약간 변형된 이원적 소득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주요 국가들은 금융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허용하거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북유럽국가들은 국가 간 자본이동이 확대되는 현상에 대응하여 1987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DIT를 도입하였다. 이원적 소득세제를 1990년대 초에 도입한 북유럽국가로는 스웨덴을 비롯하여 핀란드 및 노르웨이 등이 있다. 북유럽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DIT는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근로소득과 자본소득(금융소득)을 구분하여 금융소득은 손익 통산을 인정하는 과세구조를 지녔다. 이들 북유럽국가들은 크게 포괄적 소득과세이론의 한계와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 부과를 포기하고 DIT를 도입하였다.

북유럽국가들이 도입한 이원적 소득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도입 초기와는 다른 형태의 제도로 변하였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법이다.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 초기에는 자본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고 개인에 대한 자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임퓌테이션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문제를 완전히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변화는 오히려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자본소득으로의 조세회피 유인이 되었다.

〈표 IV-1〉 이원적 소득과세 제도 도입 당시 현황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도입연도	1987	1991	1992	1993
자본소득세(%)				
· 법인	32	28	28	28
· 기타	39.7~59	30	28	28
개인소득세(%)	39.7~59	31~56	22.5~54.5	31~56
기업이윤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				
· 배당	yes	no	yes	yes
· 유보	no	no	no	yes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 배당	yes	yes	yes	yes
· 이자	no	no	no	no
· 로열티	yes	no	yes	no

자료: 오승현·김화성(2004) 재인용, p. 28.

따라서 북유럽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퓌데이션제도를 폐지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않거나 부분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원적 소득세제하에서는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자본손실 및 자본비용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국가는 없었으며, 심지어 노르웨이는 일반소득 과세단계에서 완전 통산을 허용하였다.

본장에서는 1990년대에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와 2000년대에 완전한 이원적 소득세제는 아니지만 유사한 성격을 지닌 체계로의 개편을 단행한 독일과 일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자본이득을 다른 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고 있지만, 의료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소득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미국의 Net Investment Income Tax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1. 이원적 소득세제³⁴⁾

가. 북유럽 3국

1) 스웨덴

스웨덴은 개인소득세율이 1970년대 87%, 법인소득세율은 1980년대 60%대까지 기록하여 소득세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어 왔다. 이러한 높은 세율은 다양한 소득공제와 결합된 구조를 띄고 있어 기존의 높은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축소하는 조세개혁을 1990년부터 1991년 사이에 걸쳐 2단계로 실시하였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소득세율의 인하와 소득세 과세 베이스의 확장 그리고 자산소득세제도를 골자로 하였다. 한계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자산소득세와 간접세 세수 증가로 보충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였다. 즉, 1991년 세제개혁은 기존 총세수 수준을 유지하면서 세수부담을 재분배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세제개혁의 기본방침은 세제개혁 전후의 세수구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세제개혁 이전에는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해 32~72%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외환 및 금융자유화가 급진전되는 현상을 보임에 따라, 자본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출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여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인하하고자 세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종합과세하던 제도하에서는 부채 관련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면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공제 한도를 축소하였다. 즉, 세제개혁 이전에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 다양하고 세금을 공제해주는 금융상품들이 많아서 개인들이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식명의로 저축상품에 가입하거나 금융대출비용을 공제해주는

34) 스웨덴, 핀란드 및 노르웨이는 안중석·전병목(2007)을 토대로 수정·보완작업한 것이다.

IV. 해외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61

제도를 이용함에 따라 성실납부자에게만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그래서 정부는 공제제도를 축소하고 세율을 낮추어 자본 소득을 근로소득과 별도로 3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³⁵⁾.

〈표 IV-2〉 스웨덴 중앙정부의 세목별 세수

(단위: 억SEK, %)

	1989~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조세수입 총액	3,541	3,531	3,351	3,250
소득세 (조세구성비)	1,074 (30.3)	764 (21.7)	428 (12.8)	386 (12.5)
개인소득세	813	567	149	93
법인소득세	233	192	224	235
불가분소득세	9	-14	12	23
기타 소득세	19	19	43	35
사회보장부담금 (조세구성비)	550 (15.5)	576 (16.3)	713 (21.3)	811 (24.9)
재산세 (조세구성비)	232 (6.6)	245 (6.9)	203 (6.0)	260 (8.0)
소비세 (조세구성비)	1,685 (47.6)	1,914 (54.2)	1,897 (56.6)	1,862 (57.3)
부가가치세	1,002	1,234	1,200	1,145
휘발유세	166	172	176	185
에너지세	161	148	157	170
기타 소비세	356	360	364	372
세계개혁 조정세 ¹⁾ (조세구성비)	-	32 (0.9)	110 (3.3)	79 (2.4)

주: 1)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 1993년 1월 1일 폐지
자료: 박노호(1994), p. 107.

스웨덴은 개인소득을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다. 근로소득에는 급여 등과 같은 노동소득과 연금, 사업소득이 포함되며, 자본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소득 및 임대소득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과 비상장주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

35) Agell et al.(1996)

득의 일부도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자본소득에 포함된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원칙적으로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을 통산하지 않지만, 스웨덴은 세액공제를 통해 자본소득의 손실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부분 통산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지급이자는 자본소득에서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자본손실도 원칙적으로 100% 공제가 가능하나, 특정 경우에는 70%까지만 공제를 허용하도록 제한하였다. 순자본소득이 적자인 경우에 적자액이 10만 SEK 이하이면 자본소득세율인 3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세액에서 공제하며, 10만SEK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1%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하였다.

〈표 IV-3〉 스웨덴의 소득세율 체계(2013년)

(단위: SEK, %)

소득종류	과세대상	과세구간별 한계세율	
		국세	지방세
근로소득	413,200 이하	0	
	413,200~591,600	20	31.73 ²⁾
	591,600 초과	25	
자본소득 ¹⁾		30	-

주: 1) 자본손실이 10만SEK까지는 30%, 10만SEK 초과한 경우에는 21%

2) 스톡홀름은 지방세가 29.43%

자료: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13.

2)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세율 인하와 동시에 각종 공제제도를 정비하여 과세베이스를 확장하는 세제개혁을 1991년에 단행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2004~2005년 단행된 세제개혁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였다.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초기에는 임퓌테이션을 통해 배당소득 이중과세를 조정하였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에 대

IV. 해외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63

해서 적용하는 세율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할 유인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이후에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증대시키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였다. 그리고 2006년 이후에는 일반소득(general income)과 개인소득(personal income)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일반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포괄하는 모든 소득을 의미하며, 법인소득도 일반소득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이전에는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일반소득에 대해 2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다.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소득세 이외에 사회보장세와 개인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었다. 사회보장세는 비례세로 근로소득의 7.8%, 연금의 3%, 개인소득세는 0%와 9%(Finnmark와 Nord-Troms 거주자는 7%), 12%의 3단계 누진세율구조로 부과하였다. 따라서 개인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은 47.8%이고, 이는 2004년의 55.3%에 비해 7.5%p 낮아진 것이다.

그리고 2005년 이전에는 사업소득을 개인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여, 자본소득으로 분류된 사업소득은 28%의 일반소득세율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는 임퓨테이션을 통하여 완전히 해결하였다. 또한 주식양도차익에 포함되어 이중과세될 수 있는 유보소득 부분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2005년 세법개정으로, 사업소득을 개인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분류할 때 이용하던 분할법과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임퓨테이션제도를 폐지하였고, 대신에 주주배당과세 방법(the shareholder model)을 도입하였다. 주주배당과세 방법은 기업 배당액 중 무위험 투자수익(risk-free rate of return)을 초과하는 부분을 일반소득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8%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즉, 법인세(28%)를 뺀 나머지 72%만의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되므로, 무위험 투자수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8.16% ³⁶⁾가 적용되는 것이다. 파트너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8%의 일반소득세율로 파트너 단계에서

36) $28+28\times(1-0.28)=48.16$

과세되며, 무위험 투자수익을 초과하는 배당금액에 대해서도 28%의 일반소득세율로 과세된다. 이와 달리 개인의 경우에는 무위험 투자수익을 초과분에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주주배당과세 방법을 도입하면서 이중과세 조정제도는 폐지됨에 따라,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48.16%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자본소득을 일반소득에 포함하여 다른 소득과의 통산을 허용하므로, 자본손실 및 비용도 다른 소득과 통산하여 공제가능하며, 일반소득이 적자인 경우에는 10년간 이월가능하다.

〈표 IV-4〉 노르웨이의 소득세율(2013년)

(단위: NOK, %)

	과세대상소득	과세구간별 한계세율		
		국세	지방세	합계
일반소득	제한 없음	10.35	17.65	28 ¹⁾
개인소득	509,600	0		0(35.8) ²⁾
	509,600~828,300	9	-	9(44.8) ²⁾
	828,300 초과	12		12(47.8) ²⁾
지방세	사회보장세	7.8 ³⁾	-	7.8
법인소득	제한 없음	10.35	17.65	28

주: 1)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Finnmark와 Nord-Troms 거주자는 이주하는 주민에 한해서는 24.5%

2) 일반소득세와 개인소득세, 사회보장세 모두 포함 시

3) 연금 등에 대해서는 4.7% 적용

자료: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13.

3) 핀란드

핀란드는 1993년에 스웨덴, 노르웨이에 이어,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한 국가로 개인소득을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다. 먼저 근로소득에는 임금, 연금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의 배당, 개인사업 및 파트너십의 사업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부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투자소득에는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산림소득, 투자펀드

IV. 해외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65

로부터 발생한 분배액, 특허 또는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자본이득 등이 포함된다.

핀란드는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당시에 개인의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8% 세율을 적용하였으며, 2013년 현재에는 30%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0~32%의 초과누진세율구조를 가진 국세와 16~21%의 지방세와 1~2%의 교회세를 부과하는 구조였으나, 2013년부터 누진세율구조로서 6단계로 나누어 0~31.75%의 국세와 15~20%의 지방세와 1~2%의 교회세(Helsinki 1%)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율은 2004년까지 29%를 적용하였다가 2005년에는 세율을 인하하여 26%를 적용하였다. 2013년부터 24.5%로 추가 인하하였다.

〈표 IV-5〉 핀란드의 소득세율(2013년)

(단위: 유로, %)

소득종류	과세대상소득	과세구간별 한계세율		
		국세		합계
근로소득	16,100 미만	0	15.0~20.0	15.0~20.0
	16,100~23,900	6.5		21.5~26.5
	23,900~39,100	17.5		32.5~39.5
	39,100~70,300	21.5		36.5~41.5
	70,300~100,000	29.75		44.75~49.75
	100,000 이상	31.75		46.75~51.75
투자소득	제한 없음	30.0	-	30.0

자료: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13.

또한 핀란드는 1990년부터 2004년까지는 임퓨테이션방식을 통해 배당소득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였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임퓨테이션제도를 폐지하고 배당소득 중 일부만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함으로써 부분적인 조정만 시행하였다. 기업이 배당수익자일 경우에는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투자소득으로 간주되는 배당액은 70%만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므로 총세부담은 법인세와 투자소득세를 포함하여 40.355%³⁷⁾가 된다. 비상장기업으로부터

터 받은 배당소득은 투자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며, 연간 6만유로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³⁸⁾

비상장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이 보유지분가액에 9% 수익률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범주에 속하는 부분은 투자소득으로,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한다. 이때 6만유로 초과분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70%만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며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근로소득분의 경우, 6만유로 초과분에 대해서도 70%만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부과한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순투자소득이 적자일 경우에 적자금액에 세율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만큼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세액 공제한도액은 1,400유로이고, 추가로 부양자녀 수 1명당 400유로를 인정하고 있다. 자본손실은 자본이득과의 상계만 가능하며,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다.

나. 독일

독일은 일부 자산의 단기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여 오다가, 2009년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한 이후에는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2003년 이후에 이원적 소득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2006년 수정된 이원적 소득세제를 제안하였다가 2009년에 독일식 이원적 소득세제(Abgeltungsteuer, final withholding tax)를 도입하였다.³⁹⁾

따라서 독일은 2008년 이전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하고 원천징수액의 5.5%를 연대세(solidarity surcharge)로 부과하였다. 그리고 개인용 자산의 자본이득의 경우, 특정기간 내 처분자산에 대해서만 우선 비례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후에는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해외로의 자본이탈 방지와 금융소득세제의 단

37) $24.5 + 0.7 \times (1 - 0.245) \times 30 = 40.355$ (2012년 이전에는 28% 적용)

38) 2012년 이전에는 9만유로

39) 오윤(2012), p. 185.

IV. 해외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67

순화를 위해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하였다. 따라서 발행 주식 1% 미만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2008년까지는 비과세 처리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과세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비과세되던 파생상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부동산을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09년부터 「소득세법」 제32a조에서 일반소득에 대해서는 14~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이자·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은 「소득세법」 제32d조에 대하여 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25%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이원적 소득세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소액 저축자에 대해선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본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소득세율이 25% 이하를 적용받는 자는 신고에 의해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종합과세를 선택한 납세자가 불리한 경우에는 자본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26.375%로 원천징수한다.⁴⁰⁾(〈표 IV-6〉 참조)

북유럽국가들에 비하여 늦게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한 독일에서는 다른 나라의 제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하여 다소 변형된 독일식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였다. 북구국가들이 법인소득, 금융소득, 양도차익, 임대소득, 사업소득 중 자본기여분을 자본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하는데 비하여, 독일은 법인세는 별도로 징수하고,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한다.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손실상계가 가능하며,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증권양도손실은 증권양도차익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과도 상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손실상계가 인정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주식 및 은행계좌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모으는 행태가 나타났다.⁴¹⁾ 그리고 2009년 1월 1일부터 금융비용, 계좌관리 비용 등 투자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연간 1인당 801유로까지 일괄공제하였다.

40)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financial_securities/kabu04.htm

41) 오윤(2012), p. 187.

〈표 IV-6〉 독일의 소득세율(2013년)

(단위: 유로, %)

소득구분		과세방식	세율	
근로소득		종합과세	8,130 미만	0
			8,131 ~ 13,469	14 ~ 23.97
			13,470 ~ 52,881	23.97 ~ 42
			52,882 ~ 250,730	42
			250,730 이상	45
금융소득	이자소득	분리과세	25%(연대부가세 5.5% 별도): 26.375%	
	배당소득 ¹⁾			
	자본소득 ²⁾			

주: 1) 법인세 납부후 분배된 소득에 대해서 40% 비과세 적용

2) 기업지분 양도소득에 40% 비과세 적용

자료: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13.

〈표 IV-7〉 북유럽국가들의 이원적 소득세제 개편 당시 소득세제 비교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근로소득	국세 0, 20, 25% 지방세 평균 31%(2003년) (28.9~33.72%)	국세 0~35% 지방세 평균 18%(2003년) 15.5~20%)	일반소득: 국세, 지방세에서 28% 개인소득: 국세가 0~19.5% 추가 지방세 평균 18%(2002년)	0~45%
자본소득	30%(국세만)	29%(국세만)	28%	25%(연대부가세 5.5% 별도): 26.375%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가능)
이자소득	원천징수 있음	원천징수 있음	원천징수 없음	
배당소득	조정 없음 원천징수 있음	원천징수 있음	원천조정 있음(임퓨테이션) 원천징수 있음	
주식 양도이익	자본소득세율로 과세(실현 시)	자본소득세율로 과세(실현 시)	자본소득세율로 과세(실현 시)	자본소득세율로 과세
양도손 취급	기타 자본소득으로부터 공제 가능(순양도손실의 70%) 손실의 이월 불가	동종 소득으로부터만 공제가능 손실 이월가능(3년간)	다른 자본소득으로부터 공제가능	다른 자본소득과만 손실상계
이중과세	조정 없음	조정 없음	RISK방식으로 조정	조정 없음
순손실	근로소득과 실질적으로 통산 가능(30%의 세액공제)	근로소득과 실질적으로 통산가능 (29%의 세액공제)	근로소득과의 통산 가능 (일반소득 내에서의 통산) 10년간 이월 가능	자본손실이 있는 경우 이월가능하되,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상계 가능
법인세율	28%	29%	28%	15% ¹⁾

주: 1) 2008년 이전에는 25%이었으나 2007년 8월 27일 법 개정으로 2008년 이후에는 15% 적용
자료: 日本 經濟産業省(2004.4.30) 참조 작성, 독일은 별도 정리

2. 일본의 금융소득과세 일원화⁴²⁾

일본은 1990년 초 거품경제 이전까지는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여 가계 금융자산이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거품경제 이후 경기침체와 저출산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저축률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향후 인구가 점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축률의 상승으로 인한 금융자산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주요국과 투자성향을 비교해 보면 가계금융자산의 대부분이 예·적금이며, 주식이나 주식투자신탁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소득과세의 국제화 관점에서 금융소득과세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1997년 일본 세제조사회 금융소위원회 보고서에 의해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축으로부터 투자로라는 구조개혁하에 금융소득과세 일원화를 제시하였다. 금융상품을 각각의 필요에 의해 투자할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이들 금융상품에 대한 손익 통산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는 일본정부 세제조사회가 금융소득과세의 일원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일본정부 세제조사회가 제안하는 금융소득과세 일원화 조치의 기본 방향은 금융상품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손익 통산의 범위를 가능한 넓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금융상품의 발전이나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과세의 중립성 및 간소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의 상이한 금융상품 간 과세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금융소득별로 다른 세부담의 격차를 줄여가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일원화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주식, 투자신탁, 예·적금, 공사채, 이들 복합상품이나 증권화상품, 펀드, 파생금융상품 및 저축성을 갖는 보험상품 등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정하였다.

42) 일본 세제조사회 금융소위원회(2004.6.15), 「금융소득과세의 일원화에 대한 기본방향」을 번역 요약·정리한 것이다.

〈표 IV-8〉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구체적인 내용(2004.6.15)

	내 용
과세방식의 균등화 (20%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 이외 상장주식의 배당, 공모주식의 수익분배금 (현행: 종합과세가 원칙) - 공사채, 공사채투신의 양도이익 (현행: 양도비과세, 양도손실은 없는 것으로 간주) - 외화예금의 환차익 (현행: 잡소득으로 종합과세) - 금융소득 이외의 보험수익 (현행: 일시소득/잡소득으로 종합과세)
손익 통산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으로부터 투자로'라는 정책적 요구에 따라 주식양도손실과 손익 통산의 인정 범위에 이자소득도 포함 ① 주식 양도손익과 공사채 양도손실 ② 상장주식의 배당과 양도손실, 공모주식투자의 수익분배금과 양도손실 ③ 주식양도손실과 이자소득
납세환경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익 통산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이익과 손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음. 이때 세무당국은 번호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신고서 내용과 배당 등 지불자로부터 제출한 지불조서 내용을 검토함

자료: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financial_securities/n12.htm

가.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내용

1) 과세방식의 균등화

2003년 세제개정에서 대주주 이외의 상장주식의 배당금과 공모주식의 투자신탁이 지급하는 분배금은 일반투자자의 금융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였다. 그러나 대주주에 대해서는 사업참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과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사채 양도차익은 당시 비과세되고 있었으나, 주식양도차익과 마찬가지로 과세전환함과 동시에, 양도손실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정하기로 하고, 공사채의 상환차손이나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손익과 동일한 취급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당시 공사채 양도차익은 경과이자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비과세처리하였으나 다른 금융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공사채의 양도차익 과세를 실시할 경우, 공사채투자신탁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외화표시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은 다른 금융상품과의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였다. 환차익 중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양도 시에 환차익이 실현되기 때문에 주식양도이익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하였다. 한편 외화예금의 환차익은 잡소득으로 종합과세하고 있었으나 과세방식의 균등화 차원에서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였다.

보험도 개인의 금융자산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금융유사상품으로 간주하여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20%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하였다. 기존에는 일시불 노양보험(5년 이내)을 제외한 보험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일시소득 또는 잡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보험료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만기보험금이나 중도해지반환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다른 금융소득과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금융소득으로 간주하여 분리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2) 손익 통산의 범위 확대

일본은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조치 이전에는 이자,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 등의 금융소득을 각각 서로 다른 소득으로 분류하여 이들 소득 간의 손익 통산은 허용하지 않았다. 주식양도손실은 주식양도차익에서만 공제가능하며 상장주식의 양도손실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였다.

일본정부 세제조사회는 금융소득이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과 손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소득 간에 손익 통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위험자산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여 줌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현행 소득세제하에서 양도소득

은 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한 손익이 납세자의 양도시에 과세되는 반면, 이자, 배당 등 경상소득은 기본적으로 매기간 실현하여 과세된다. 이러한 세제상의 차이 때문에 주요국에서도 양도소득과 경상소득 간 손익 통산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많다. 세제조사회는 손익 통산의 대상이 되는 손실과 이익 간 과세균형을 필요하다고 보았다.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종합과세되는 소득 간 손익 통산이나 분리과세되어도 세율이 다른 소득 간 손익 통산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손익 통산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주식 양도손익과 공사채의 양도손익 간 손익 통산의 경우, 모두 유가증권의 양도손익으로서 동일한 성격이 있으므로 적정한 집행체제하에서 공사채양도손익이 과세될 경우 손익 통산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정책적으로 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및 공모주식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은 양도손실과의 손익 통산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 이유로 첫째, 배당과 주식양도손실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서로 높은 관련이 있다는 점, 둘째,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게 되면 배당과 주식양도손실 간의 과세상 취급은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셋째, 이자소득은 경상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도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주식양도손실과 이자소득과의 손익 통산을 허용하게 되면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일률 원천분리과세하고 있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손익 통산 신고가능한 제도로 개정하여야 하며 지불조서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가치는 없어진다. 이런 경우 현행세법은 소득의 처분으로 간주하여 손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상장폐지 직전에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손실을 공제해준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상장폐지 여부를 사전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주식가치가 멸실되는 경우도 양도손실로 인정해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3) 납세환경의 정비

금융소득과세의 일원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납세환경을 정비해야 하고 적절한 제도의 집행이 필요하였다. 당시 일본의 소득세제는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를 활용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손익 통산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납세자는 손익 통산을 하기 위한 신고의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신고납세를 위한 납세자번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손익 통산을 위한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당국은 본인확인 절차와 납세자가 신고한 손익을 체크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당국은 지불한 자가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불증서 내용과 납세자의 신고서 내용을 대조해야 한다. 이때, 세무당국과 납세자 모두가 편리하지만 정확하게 대조할 수 있고 적절한 납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번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이 납세자번호제도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므로 납세자번호제도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납세자번호의 이용 여부는 납세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번호를 선택제로 도입할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번호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나.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대한 평가

일본은 2001년에 유가증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26%의 세율을 부과하는 신고분리과세로 일원화하려고 하였으나,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2년 후인 2003년 이후로 연기하였다.⁴³⁾ 그리고 개인의 경우, 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로 인한 이익은 2003년까지는 잡소득으로 간주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다른 소득과 분리하

43) 2003년 1월 1일 이후 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 우대 세율 10%(소득세 7%, 주민세 3%)로 과세하는 특례 조치를 도입하였다.

IV. 해외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75

여 신고분리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금융상품에 대한 신고분리방식으로의 일원화를 시행함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세제를 마련하였다. 이자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하고 배당소득은 2009년까지 상장주식 배당에 대한 20% 신고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13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종합신고를 통해 배당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분리과세 하였다. 파생상품의 경우 20%의 세율로 과세하나 선물옵션거래 차익은 신고분리과세하면서 다른 종류의 소득과 손익 통산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주가지수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와 관련되는 매매손익은 상품 선물거래와 관련되는 매매손익과 손익 통산할 수 있으나, 주식 및 투자신탁의 이익과는 손익 통산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손익통산 후 손익과 순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3년간의 이월공제를 인정한다. 또한 2012년 1월부터는 장내 거래와 장외 거래 간의 손익 통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의 금융관련 세제를 시계열적으로 정리해보면, 포괄적 과세베이스에 의한 종합소득과세에서 이자소득 분리과세 과정을 거쳐, 금융소득과세 일원화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조치는 북유럽국가들의 DIT와는 달리 금융소득의 일원화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을 뿐, 근로소득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별도로 분리과세하고 금융관련 소득을 근로소득과는 다른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이 이원적 소득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일본의 금융소득과세 일원화 조치는 이원적 소득세제와는 다른 개편이다.

그러나 井堀(2006)은 자본소득은 노동공급의 대가인 근로소득과는 다른 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과는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징세 측면에서도 현실적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일본의 세율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다면 자본유출이 일어나게 되므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자본이득을 완전한 소

득으로 보아 과세하며 그 수준이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소득원천설적인 측면에서의 이원적 소득세제적인 제도개혁으로 이자·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하여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형성해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⁴⁴⁾

3. 미국의 순투자소득세⁴⁵⁾

미국의 세제는 이원적 소득세제적 요소보다는 포괄적 소득세제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구조로, 원칙적으로 여타 소득과 자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그러나 금융소득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세상 약간의 차이는 두고 있다.

최근 오바마 정부는 2013년 1월에 발효된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Medicare Contribution Tax로 알려진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이하 NIIT)를 신설하였다. 건강보험개혁으로 인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소득 근로자의 메디케어 세금을 0.9% 인상하였고, 추가적으로 고소득자의 투자소득에 대해 3.8%의 세금을 부과하는 NIIT를 도입한 것이다.

NIIT는 그 성격상 미국의 금융소득과세의 전반적인 틀을 설명하는 제도는 아니다. 오히려 고소득층의 투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부유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순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의 성격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NIIT는 순투자소득이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조정된 총소득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3.8%의 세율을 적용한다. 일정금액이란 <표 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대주와 독신의 경우는 20만달러, 부부가 합동으로 세무신고할 경우에는 25만달러, 부부가 따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는 12.5만달러를 말한다. 순투자소득은 총투자소득에서 거래수수료, 투자자문료, 투

44) 오윤(2012), p. 196.

45) PWC(2013)

IV. 해외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77

자 관련 이자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투자소득에는 이자, 배당금, 자본 이득, 로열티, 임대소득, 수동적인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적격연금이나 은퇴계좌의 소득, 지방정부 채권의 이자 등이 투자소득에서 제외된다. NIIT는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NIIT는 투자소득의 종류를 포트폴리오 소득, 금융상품이나 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자산처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손익은 통산을 허용하나 다른 종류의 손익은 통산을 허용하지 않는다.

〈표 IV-9〉 미국의 NIIT

(단위: 달러)

구 분	임계치
결혼 후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married filing jointly)	250,000
결혼 후 따로 세금보고하는 경우(married filing separately)	125,000
독신	200,000
세대주(head of household)	200,000
편모(qualifying widow with dependent child)	250,000

자료: www.irs.gov

〈표 IV-10〉 주요국의 이자, 배당 및 주식양도차의 과세 개요(2013년 1월 현재)

	일본	미국	독일
이자	원천분리과세 20% ¹⁾ (소득세 15%, 지방세 5%)	종합과세(10~39.6%) + 주·지방정부세 ²⁾ (뉴욕시) 주세(4.00~8.82%), 시세(2.55~3.40%) + 세액의 14%의 부가세	분리과세 ※ 종합과세도 선택가능 26.375%(소득세 : 25%, 연대부가세: 세액의 5.5%)
배당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 분리과세: 20%(소득세 15%+개인주민세 5%) [2013년 12월 말까지] 10%(소득세 7%+ 개인주민세 3%) · 종합과세: 10~50% ※ 2009년 이후 주식양도손실과의 손익 통 산을 위해 신고분리과세 선택가능 20% (소득세 15% + 개인주민세 5%) [2013년 12년 말까지] 10%(소득세 7% + 개인주민세 3%)	단계적 과세(연방세) 3단계(0, 15, 20%) + 종합과세 (주, 지방정부세) (뉴욕주) 주세(4.00~8.82%), 시세(2.55~3.40%) + 세액의 14%의 부가세	분리과세 ※ 종합과세 선택가능 ³⁾ 26.375%(소득세 : 25%, 연대부가세 : 세액의 5.5%)
법인세외의 조정	배당소득과세 공제방식(종합과세 선택시)	조정없음	조정없음

주: 1) 특정공사채 등의 이자에 대해서는 20%(소득세15%, 주민세 5%)의 세율에 의한 신고분리과세대상임. 원천징수되는 부분에 대
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다만, 동종회사가 발행한 사채이자로 그 동종회사의 증업원이 지급받은 것은 종합과세대상
임(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2) 주, 지방정부세의 세율은 각기 다름

3) 자본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의 소득세율이 25% 이하인 자는 신고에 의해 종합과세 세율 적용. 신고 결과, 종합과세
를 선택한 납세자가 불리한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자본소득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여 26.375%로 원천징수함

자료: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financial_securitys/rtsi02.htm

V.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1. 기본 방향

앞서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은 세법상 이자와 배당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지 않다. 동일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금융상품의 분류에 따라 다른 세목이 적용되거나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등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아 이자나 배당소득을 자본이득으로 전환하는 조세차익거래로 인한 조세회피, 이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또한 펀드 투자에서 자본손실이 이자나 배당보다 많아 실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문제, 즉 두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한 상품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가 되는 등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 더불어 만기가 3년인 ELS와 같은 장기금융상품의 경우, 만기에 소득이 실현되면 결집문제가 발생하여 종합과세대상자는 누진세가 적용되어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이런 현행 금융세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현행제도의 틀 안에서 세제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적이며 단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면, 여기서는 보다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은 이자, 배당 및 자본이득을 포괄하는 것으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

으로 함으로써 금융상품 간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고 금융세제를 단순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본원칙만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설계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정책적으로 여러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본의 이동성, 결집문제(bunching problem), 동결효과(lock-in effect), 인플레이션 조정, 위험감수효과(risk-taking effect), 세수효과, 투자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하여 금융투자소득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자본의 이동성이나 동결효과 등을 고려하여 세율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결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세제상 우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융자산 가치 상승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투자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나 비용공제는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금융투자소득세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금융상품 간 조세 중립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유럽국가들이 도입했던 이원적 소득과세에 대하여 평가해보기로 하자. 앞의 제IV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유럽국가들의 이원적 소득과세는 자본소득에 대해서 저율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은 종합해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자본소득은 이자·배당소득, 자본이득, 임대소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자비용이나 자본손실은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세금의 경감을 위해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근본 취지는 모든 형태의 자본소득에 대해서 단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본소득 간의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Sorenson(2007)는 북유럽국가들의 이원적 소득과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노동에 비해 이동성이 높은 자본에 대해 저율의 세율로 분리과세함으로써 자본도피(capital flight)의 위험을 축소할 수 있다. 둘째, 모든 형태의 자본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자원배분의 왜곡효과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저율로 과세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

분에 대한 과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넷째, 자본소득과 법인세율을 일치시킴으로써 조세차익 거래를 축소할 수 있다.

그는 이원적 소득과세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지만 실제 이원적 소득과세제도는 수직적 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자본소득은 주로 고소득층에게서 발생되기 때문에 자본소득에 대한 세제상 우대는 수직적 형평성을 악화시켜 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이원적 소득과세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새로운 금융투자소득세제 도입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중호·한상국(2006)과 같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우리나라가 이원적 소득과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이득과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자본이득에 대해 저율로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자본이득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상충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상 이자와 배당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만약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현재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처럼 20% 세율로 분리과세할지 이보다 낮은 세율, 예를 들면 이자와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인 14%로 분리과세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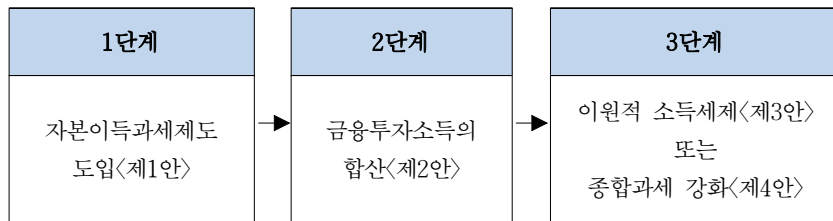
2. 도입을 위한 대안

이자·배당 등 현재 정의되고 있는 금융소득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에 대

한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하에 모든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 방안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V-1]에서의 <제1안>과 <제3안>은 이하에서 보는 각각의 세부안들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림 V-1] 단계적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



제1단계로 현재 비과세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과도기적으로 도입하고, 제2단계에서는 이자·배당소득과 함께 자본이득을 모두 함께 묶어서 현행의 틀 안에서 과세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원적 소득 과세제도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각 단계별 도입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가. 제1단계: 자본이득과세 도입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의 첫단계는 금융소득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제도의 도입이다. 그 방안으로서 다음의 <제1안>과 <제1-1안>을 제시한다.

제1안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 과세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	--

V.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83

〈제1안〉은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틀을 유지하되, 새로 과세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이다. 자본이득에 대하여 새롭게 과세가 되는 만큼, 분리과세를 통하여 초기에 세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이러한 방식을 취하였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이다. 자본이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누진적인 세부담을 지지 않는 만큼 현행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인 14%보다 높은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과도기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자·배당과 자본이득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앞서 지적한 현행 금융세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자본이득이 있는데 각 소득별로 다른 과세방식이 적용된다면 구분회계도 필요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된다. 이런 문제는 펀드뿐만 아니라 모든 복합금융상품에서 발생된다. 또한, 각 소득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될 경우 손익 통산을 어렵게 하여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 투자에서 실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방안은 자본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초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겠다.

제1-1안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 과세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전액 분리과세하는 방안
-------	---

〈제1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1-1안〉을 생각할 수 있다. 즉, 현행 체제대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로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 과세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전액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제1안>에 비하여 소득 종류에 따른 조세의 중립성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으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의 경우에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본이득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은 남는다. 또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전액 분리과세하는 방안은 과도기적으로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도한 우대세제라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14%라는 세율이 종합과세의 최저세율과 비교하면 높은 세율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계층은 고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세제라는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나. 제2단계: 현행 제도하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확대

제1단계의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쳐서 자본이득을 포함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의 본격적인 도입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 <제2안>은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틀 안에서 금융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제2안	<p>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틀을 유지하면서 금융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확대하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소득 2천만원 미만 -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 금융투자소득 2천만원 이상 - 종합과세(누진세율)
-----	---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도 이자나 배당소득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는 것이다. 현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자·배당·자본이득을 하나의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V.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85

이 방안에 따르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간 조세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조세차익거래의 유인을 제거하여 조세회피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모든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한도를 넘을 경우에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결집문제나 과세이연을 위한 동결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한도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분명 장점을 지니고 있다. 금융시장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장기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경감조치 등의 보완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제3단계: 이원적 소득세제 vs 종합과세의 강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 또는 종합과세의 강화라는 두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아래서 제시하는 <제3안>⁴⁶⁾은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방안이고, <제4안>은 종합과세의 강화방안이다.

1) 이원적 소득세제

제3안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폐지하고, 이원적 소득세제로 전환하는 방안 ▶ 금융투자소득을 분류과세하여 단일세율 적용(20~30%) ▶ 근로/사업소득 등은 현재와 같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	---

<제3안>은 현행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이원적 소득세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즉,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었던 이자·배당소득을 자본이득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이를

46) <제3-1안>과 <제3-2안> 포함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북유럽 여러 나라의 세율을 참조하면 20~30% 정도의 단일세율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14%의 분리과세 세율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이 많은 고소득 계층일수록 동 제도에 따른 세부담 경감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사업소득 등은 현재와 같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제3-1안	<p>〈제3안〉과 동일하나 금융투자소득에 2단계 누진제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소득을 분류과세하여 2단계 누진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소득 2천만원 미만(세율 14~20%) - 금융투자소득 2천만원 이상(세율 20~30%) ▶ 근로/사업소득 등은 현재와 같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	---

〈제3-1안〉은 북유럽국가의 이원적 소득과세와 종합소득과세의 복합적 형태이다. 이 방안은 이원적 소득과세제도가 지니고 있는 장점을 유지하면서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즉, 금융투자소득을 근로/사업소득 등과 분리하여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⁴⁷⁾

이 방안이 〈제3안〉과 다른 점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다.

이 방안에서는 어떻게 세율구조를 결정하느냐가 핵심이다.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이자, 배당, 자본이득 등 금융투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금융투자소득 간 조세중

47) 세계 금융의 중심국가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장기자본이득을 제외한 총소득에 따라 누진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방안을 도입한 국가의 사례는 찾기 어렵다.

V.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87

립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금융세제를 단순화하고 이원적 소득과세제도가 지니고 있는 수직적 형평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이 경우에는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2천만원 기준이나 14%의 세율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세수 중립적인 측면에서 금액기준을 다소 상향 조정하고, 동시에 세율은 14%, 20% 대신에 각각 14~20%, 20~30%로 하여, 분류과세하는 만큼 보다 높은 북유럽국가의 세율에 근접하는 높은 수준을 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제도하에서 1,200만원 이하의 금융투자소득만 있는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공제의 허용을 통하여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종합과세보다 못하나, 자본에 대한 과세 경감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3-2안	〈제3-1안〉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2단계 누진제를 근로/사업소득 등과 동일한 단계의 누진제 적용
-------	---

〈제3-1안〉과 〈제3-2안〉의 차이점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2단계 누진세율체계를 근로/사업소득 등에 부과하는 다단계 누진세율로 바꾸는 방안이다. 금융투자소득을 분류과세함으로써 현재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폐지하되, 금융투자소득에도 근로/사업소득 등과 동일한 다단계 누진세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현행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자본이득과 근로소득 간의 조세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수직적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 즉,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는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모든 소득을 종합과

세하는 <제4안>과의 차이점은 역시 금융투자소득을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누진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제2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누진세를 적용할 경우 결집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기보유특별 공제제도와 같은 보완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종합과세의 강화

이원적 소득세제에 대한 대체안으로서 종합과세의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제4안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으로써 누진과세를 적용하되, 장기투자소득 등 일부 소득에 대하여 예외를 두는 방안
-----	---

<제4안>은 현재의 미국 또는 영국식 종합과세제도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되, 장기투자소득은 분리과세하여 세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여기서 금융투자소득은 이자·배당·자본이득을 모두 포괄하는 소득인데, 1년 이상 유지하는 예금이나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장기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궁극적으로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아직 자본이득 과세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 곧 바로 <제4안>을 채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앞서 설명한 중간단계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이다.

3. 세부 사안

1) 금융투자소득의 정의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금융상품이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자본이득 등의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이라고 정의한다.

V.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8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세법상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한정되어 있고, 여타 복합적인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이자나 배당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손익인식의 시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자본이득에 대해서 발생주의 방식보다는 실현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발생주의 과세방식은 납세협력 비용이 너무 크며, 현금흐름이 없는 납세자가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유동성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파생상품 등을 중심으로 시가평가에 의한 과세방식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조세행정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실현주의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이자·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묶어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실현주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자·배당소득은 매기간 실현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만큼,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동일 기간 내에 실현되는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손실 공제/이월 기간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는 일부 동일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손실의 손익 통산을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주식의 양도손실에 대해서만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타 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의 양도손실만 발생한 경우에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제에서는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소득의 통산을 허용하는 것이 금융세제를 단순화하는 데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

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펀드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자본손익 등을 통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양(+)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된다. 또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한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다른 금융상품들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통산함으로써 순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두 개의 ELS에 투자하여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한 ELS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과세되는 문제 등도 해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의 전반적 손익 통산 허용은 금융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문제는 세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자본이득의 손실공제한도를 3천달러로 하여 다른 경상소득에서 공제를 허용하고 그래도 남은 자본손실은 기한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위에서 제시한 대안들 가운데 이원적 소득세제를 선택할 경우, 금융투자소득의 분류과세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의 통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 통산을 허용하고, 손실이 남을 경우에 향후 세수 동향을 보아가면서 1~3년 정도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제4안>과 같은 종합과세 체계로 가는 경우에는 제한적이나마 다른 소득과의 통산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4) 인플레이션 조정/장기보유 우대 여부

단기자본이득의 경우에는 투기적 거래의 결과로 보기도 하지만 장기자본이득은 자본형성 과정의 결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금융상품이나 금융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한 자본이득은 상당부분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의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장기보유에 따라 누적된 수익이 일시에 실현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결집효과로 누진세를 적용할 경우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한 많은 국가들은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 세금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이나 해외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시 장기보유에 대한 우대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제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이 자본이득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세를 통하여 인플레이션과 결집문제를 완화하고 있다. 과거 영국과 호주에서는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기자본이득을 조정하였으나 1990년대 말부터 장기보유 금융자산에 대해 더 많은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투자소득세제 도입 시 금융자산의 장기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의 부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5) 비용공제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투자자문수수료, 거래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비용에 대해서 전액 공제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양도차익이나 대주주 양도차익, 해외주식 양도차익 등의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금융투자소득세제 도입 초기에는 이 기본공제금액을 크게 하여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단계적으로 기본공제 금액을 축소하면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 저세율로 과세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이보다는 일단 금융투자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설정하고 기본공제금액을 크게 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VI. 결 론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제하에서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세제는 일관성이 없고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세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소득세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금융세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및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과세하고, 점진적으로 3단계를 걸쳐 이원적 소득세제로 가거나, 아니면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1단계로 제시된 <제1안>은 현행의 체제하에서 가장 변화가 적은 과도기적인 방안이다. 자본이득세제를 분리과세제도로 도입하는 방안인데, 이 경우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현재의 문제점이 그대로 남게 된다. 분리과세 세율 수준을 14%로 할 것인지 또는 20%로 할 것인지에 따라 두 가지 세부적인 안으로 분리할 수 있다. 14%안은 현재의 이자·배당소득세율과 일치한다는 장점이 있고,⁴⁸⁾ 20%안은 분리과세로 세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20% 정도를 부담시켜 그나마 세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경우 모두 조세의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으나, 실행 가능하며 현행 제도에서 가장 변화가 적게 자본이득과세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과도기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제1단계에서 분리과세를 하는 이유는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 즉 새로운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충격

48) 물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단계에서 제시하는 <제2안>은 현행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자와 배당으로 구성되는 금융소득에 자본이득을 포함하는 금융투자소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동 방안은 일단 현행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틀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제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금융투자소득 간의 조세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 제3단계에서는 이원적 소득과세제도로 가든지 아니면 종합과세제도를 강화하든지 두 가지 방안 중에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제3안>에서 제시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는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틀을 버리고,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의 이원적 소득과세제도 중의 하나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종합과세대상 기준금액 2천만원 또는 세율 14%의 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분리과세되는 만큼 세율은 20~30% 정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세율이 현행보다 높아진다면 기준금액도 현행의 2천만원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원적 소득세제에 대한 대체안으로서 <제4안>은 궁극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장기투자소득에 대하여 예외적인 조치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제도조차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제3안>이나 <제4안>은 보다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3안>을 선택할 것인가 <제4안>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상대적인 가중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철학적인 문제와도 연관된다고 하겠다. 현실적으로 효율성이나 형평성만을 전적으로 고려한 제도는 생각하기 힘들며, 결국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는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로 인하한 것은 수직적 형평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종합과세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연장한다면 <제4안>으로 가는 제도 개선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자본의 이동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틀을 버리고 <제3안>의 이원적 소득세제로 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현행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원적 소득세제의 요소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궁극적 정책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정비 방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서는 제시된 여러 대안에 따른 기대효과 또는 세수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모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자본이득과 세제도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실제로 개인의 투자활동과 수익에 대한 자료를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개략적인 방식으로 세수효과 등을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제시된 개략적인 규모의 경우 신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그 이후 단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미시적인 자료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설계를 제시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곽태원, 「증권양도차익 과세의 현황과 정책과제」, 『서강경제논집』, 제29집 제2호, 2000.
- 국중호·한상국, 「일본세제개혁 논의로 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고찰」, 『세무학연구』, 2006.
- 김애경·문성훈, 「현행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개인소득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제14-1권, 2008.
- 김유찬, 「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에 대한 평가」, 『재정학연구』, 제5권 제1호, 한국재정학회, 2012.
- 김용민, 「집합투자기구 세제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0권 제3집, 2010.
- 노영훈,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 _____, 『파생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한 조세회피와 그 대응방안』, 정책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5. 12.
- _____,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정책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0. 12.
- 문성훈·이영한, 「해외펀드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환차익 과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010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금융세제 개선방안 심포지엄, 2010.10, pp.9~43.
- 박노호, 『스칸디나비아 삼국의 조세제도: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1994.
- 손영철·서종균, 『금융상품과 세법』, 삼일인포마인, 2012.
- 안종석·권오성, 『금융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과세특례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 안종석·전병목, 「자본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연구: DIT를 중심으로」, 한국

- 조세연구원, 2007.
- 오 윤, 「자본이득과세제도 개선방안」, 『조세학술논문집』, 제28집 제2호, 2012.
- 오승현·김화성, 『채권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 2004.
- 오재선, 「자본이득과세의 제문제와 자본이득과세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 제5권, 1989.
- 유재선·김태정, 「자본이득세제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제16권, 대한경영교육학회, 2009.
- 윤현석, 「자본이득과세의 쟁점과 과제」, 『재정법제』, Issue Paper 12-18, 한국법제연구원, 2012.
- 이상엽,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13. 5.
- 이영한·강남규, 「과생금융상품의 과세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010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금융세계 개선방안 심포지엄, 2010. 10, pp. 399~445.
- 정운오·전병욱, 「금융소득 과세에 관한 연구 -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의 구분을 중심으로」, 『조세학술논문집』, 제26집 제2호, 2010.
- 장지경·최중서, 「상장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4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12, pp. 223~248.
- 정재현·최기호, 「금융세계 관련 판례 동향」, 『세무학 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12. 6.
- 전영준 외, 『유가증권 양도차익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 최경수, 「주식양도차익의 적정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3.
- 최영렬, 「자본소득과세제도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10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금융세계 개선방안 심포지엄, 2010, pp. 43~75.
- 홍범교, 『미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 정책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5. 12.

홍범교·김진수,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0. 12.

홍범교·손영철·기은선, 『ETF 및 파생결합증권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9.

日本 經濟産業省, 「産業金融機能強化のための金融所得課税のあり方に關する検討小委員會報告書(案)」, 2004. 4. 30.

日本 稅制調査會 金融小委員會, 「金融所得課税の一元化に關する基本方向」, 2004. 6. 15.

井堀利宏, 『財政學』, 新世社, 2006.

Agell, J., P. Englund and J. Sodersten, "Tax Reform of the Century - The Swedish Experiment," *National Tax Journal*, Vol.49(4), Dec. 1996, pp. 643~664.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13.

PWC, *Understanding the Net Investment Income Tax, also known as the Medicare Contribution Tax*, 2013.

Sorensen, P., "The Nordic Dual Income Tax: Principles, Practices, and Relevance for Canada," *Canadian Tax Journal*, Vol.55(3), 2007, pp. 557~602.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r.nts.go.kr>)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irs.gov>)

영국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hmrc.gov.uk>)

일본 재무성(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financial_securities/n12.htm)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financial_securities/kabu04.htm

부 록. 판례 요약 모음

① 서울고등법원2009누5840(2010.01.26.)

1.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각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 국세청
원고: ○○은행

2. 재판의 쟁점

-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을 따르면서 유형별 포괄주의를 신설하였는데,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익이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3. 판단 근거

- 선물환거래 및 예금거래가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봄
-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법률관계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관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
- 현물환계약, 예금계약, 선물환계약이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이상, 이 사건 예금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외환매매이익에 불과

할 뿐 이자소득은 아님

- 고객이 원고에게 엔화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지급 받는 것은 엔화이자 상당액에 한하고, 선물환매도차익은 이에 포함할 수 없음
- 설사 선물환매도차익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대상으로 하므로 외국통화의 매도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4. 판결

-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은 위법함

② 조심 2008서3623(2009.6.8.)

1. 청구취지

- 청구인은 선물환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엔화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에 포함하여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엔화선물환차익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여 지급받은 엔화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함
- 피고: 국세청
원고: 이○○외 9인

2. 재판쟁점

- 엔화선물환차익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3. 판단근거

- 엔화스왑예금과 관련한 선물환차익은 금전을 교부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것임
- 예금계약은 선물환계약과 분리하여 해지가 불가능하게 하는 등 엔화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결합시킨 통합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엔화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함
- 이자소득과 유사한 거래로서 그 본질이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거래를 이자소득으로 보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엔화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봄
- 엔화매입 시 체결한 선물환계약은 교환비율이 예치기간 및 만기 여부에 따라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책정되는 등 전형적인 환매계약으로서 그 선물환차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에 해당하

고, 관련 엔화선물환차익은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분명한 만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4. 판결

- 엔화스왑예금 가입에 따라 발생한 쟁점선물환차익을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③ 조심2012서3944(2012.11.26.)

1. 청구취지

- 골드뱅크 계좌에 가입후 해지하여 수령한 금액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하자, 처분청은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다른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 피고: 국세청
원고: ○○○

2. 재판의 쟁점

- 골드뱅크계좌를 통해 투자하여 수령한 금액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소정의 배당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쟁점

3. 판단근거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배당소득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에 포함함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에서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와 변동에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및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과 “제1호의 증권이나 증서 이외의 증권이나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각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함
-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광산물 등 기초 자산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봄

- 따라서 이 골드뱅크를 통한 수익이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므로 그 수익인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
- 이 건 골드뱅크 거래의 수익발생 구조와 해당은행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지구와 유사하므로 쟁점금액은 집합투자지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음

4. 판결

-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④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257(2012.01.12.)

1. 청구취지

- 원고는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환매 금액 중 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원천징수금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제기
- 피고: 국세청
원고: 주식회사 ▲▲

2. 재판의 쟁점

- 해외펀드상품의 환매시 발생한 환차익을 분리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판단 근거

-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투자신탁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금전으로 환급받는 투자신탁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배당소득에 해당하여도 구 조특법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한다는 것으로 해석
- 따라서 이 건은 펀드상품의 환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국외 또는 국내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봄
- 다만 그 배당소득금액 중 환율 변동에 의한 환차익이 구 조특법에서 규정한 과세특례대상인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
-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환매금액중 환차익부

분만을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할지 있는지에 대한 논리는 다음과 같음

- ① 구 소득세법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여 '투자신탁의 이익'의 발생 여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위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위 고시가 제정·공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② 해외 펀드상품의 경우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도록 하는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음
- ③ 피고의 과세실무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금액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의한 손익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음

4. 판결

-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투자신탁의 이익', 즉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⑤ 서울고등법원2012누4571 (2013.01.18.)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함
- 피고: 국세청
- 원고: 김○○

2. 재판의 쟁점

- 투자신탁에 있어서 환차익은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환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볼 지 여부

3. 판단 근거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원금대비 투자손실이 있었을 뿐, 소득세법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음
- 국외주식에 대한 투자이익중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주식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이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원금대비 투자손실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인 배당소득이 과세됨
- 한편, 조특법 시행령 규정에서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만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소득세법과의 균형을 이루면서 금융시장에서의 원화절상 등을 고려한 것임

4. 판결

- 이 사건 환차익이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고 위와 같이 손실을 본 상태에서 펀드를 환매하면서 원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을 경우 원금대비 투자손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뿐,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국문요약>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홍범교 · 이상엽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면서 세계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다보니, 금융세제가 매우 복잡하다. 물론 금융거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전 세계적인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일어나면서 다른 나라의 금융세제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의 금융세제가 복잡한 중요한 요인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융세제를 보다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개편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과세제도의 도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이 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을 포함하여 모든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세제의 개편 방안을 3단계로 검토하였다.

제1단계는 세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자본이득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 과세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거나, 또는 세율을 14%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본이득에 대하여 새롭게 과세하는 만큼 분리과세를 통하여 세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며, 과도기적인 정책 대안이다.

제2단계는 현행 세법상 금융소득을 자본이득을 포함하는 금융투자소득으로 확대하여, 현재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틀을 유지하면서 금융투자소

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4%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모든 금융소득 간 조세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

제3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 또는 종합과세의 강화라는 두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을 누진과세하는 근로/사업소득 등과 분류과세하는 방안이다. 분류과세하되, 단일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2단계 누진제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근로/사업소득 등과 동일한 누진단계를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세부적인 안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원적 소득세제에 대한 대체안으로서는 종합과세의 강화방안이 있다. 금융투자소득을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으로써 누진과세를 적용하되, 장기투자소득 등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궁극적으로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면서 현행 미국이나 영국식과 유사한 종합과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 경제의 일상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성장 vs 분배'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원적 소득세제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대적인 가중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A Study on the Reform of Financial Income Tax System in Korea

Beom-Gyo Hong · Sang-Yeob Lee

Currently, in Korea, only interest income and dividend income are defined as financial income by tax law. They are subject to financial income tax separately or globally depending on the total amount of financial income. But capital gains in general are not taxed, except capital gains from real estate transactions. Under this system, maintaining consistency in the tax treatment among different financial incomes from various sources is quite difficult.

Therefore improving the current financial income tax system demands a new concept, called 'Financial Investment Incom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includes all kinds of returns from financial investments. It also covers interests and dividend incomes. In those countries where financial income is taxed comprehensively, this is not a new concept. However,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this new concept in Korea, because our financial income is defined as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only by current tax law.

We propose a three stage approach to the reform of financial income tax system in Korea. In the first stage, capital gains tax should be introduced so that we can reduce the chances for tax arbitrage. Because capital gains from financial transactions are not taxed, taxpayers often change the type of income so that they can save taxes. It should be

introduced as a classified income in the beginning in order to ease the tax burden of this new tax.

In the second stage, all financial incomes should be combined and taxed as financial investment income. I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is below 20 million won, it would be taxed separately. If the income is at or over 20 million won, it would be combined with other incomes such as salary, business income, etc and taxed progressively.

In the third and final stage, we have to choose between two alternatives: various types of dual income tax system or comprehensive income tax system. Considering international movement of capital, dual income tax has a merit in terms of efficiency. While in terms of equity, comprehensive income tax system is a better alternative. Like the perennial economic debate on the choice between growth vs distribution, the last choice of tax policy on financial income shall depend on the consensus of our society.

〈저자약력〉

홍범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Brow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엽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수학과 및 경제학과 졸업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빛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13-05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13년 12월 23일 인쇄
2013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홍범교 · 이상엽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38-7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일지사
인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ISBN 978-89-8191-677-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6,000원